

인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 2023

이것만 알아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교육활동 침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께하는
인천교사노동조합

20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CONTENTS

page.

인사말 및 축사

-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강민정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신충식 인천광역시 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여는 글 _____ 17

교사와 학생의 상생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 김용서

교권 전문 교사가 알려주는! _____ 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별 대응법 | 왕건환

1. 특수학생을 괴롭히는 아이, 자기 아이만 미워한다는 학부모 | 초등학교
2. 욕설, 비방, 교사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학생 | 초등학교
3. 지각 지도 과정에서 욕설하는 학생 | 고등학교
4. 교칙에 의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왜 나만 잡아요? | 고등학교
5. 교사지시 불이행, 수업 방해 | 초등학교
6. 학부모가 방임하는 아이, 교사의 역할은? | 초등학교
7. 학부모의 잦은 연락,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 초등학교
8. 전학 간 학생이 찾아와 위협을 했을 때 | 중학교
9. 일과 후 잦은 전화, 다른 아이들과 분리 요구하는 학부모 | 유치원
10. 교실에서 성관계가 연상되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학생 | 고등학교
11.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때 | 중학교
12. 수업 중 정치적 쟁점을 다루게 될 때 | 고등학교
13. 학생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뜯어 말리면 아동학대?!
14. 한 명의 수업 방해로 피해 받는 학급 전체 아이들
15. 교사에 대한 학생의 욕설(1~2회)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던데
16. 교보위 1차 징계로도 '전학' 처분은 어려울까요?

교권 전문 교사가 알려주는! _____ 71

교사 관련 소송 양상 및 대응 | 왕건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 황봄이



CONTENTS

page.

교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_____ 9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육활동 보호 10문 10답 | 이나연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_____ 107

1. 공립유치원 초임 교사를 위한 학기 초 유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Tip
- 이승미(인천고잔유치원)
2. 초등학교 1학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소소한 Tip
- 이지은(동수초)
3.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된다는 것(초등 고학년 생활지도에 관한 이야기)
- 황수진(이음초)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학부모 상담
- 이성곤(연수중)
5. 특수교육 대상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소소한 Tip
- 박지영(송의초)

2022 인천교사노동조합의 교육활동 보호 _____ 143

인천교사노조의 교육활동 보호 활동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참석
인천교사노조 연수 프로그램
조합원 노조 상담 후기

닫는 글 _____ 173

자기돌봄을 방해하는 내 안의 욕구 | 이지연

인사말 및 축사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인사말



인천교사노조 3대 위원장 이주연

존경하는 조합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이주연입니다.

우리노조의 첫 발간물 ‘20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이 발행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지도 상담 사례 공모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어느 교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같이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문을 구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널리 알리고자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노조 사무실에는 참으로 많은 교권침해나 생활지도 고충 상담 전화들이 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학교 생활지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가 마음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고소까지 당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교사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인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인가, 교사가 가르치는 행위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교사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많은 고민과 회의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르침이 어려운 시절이 맞습니다.

2022년 12월 8일,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한 줄의 법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참 오랜 시간 걸려서 얻

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법안을 바탕으로 정당한 지도를 하는 교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특별교육/대안학교 내실화, 아동복지법 적용 개선, 법무부와의 협조 등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천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사노조는 평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집단입니다. 이 지성을 발판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및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천교사노조의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가이드북’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책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를, 더 나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인천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이주연

축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우선, ‘학교 생활지도 상담 사례 공모전’ 개최와 더불어 ‘20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까지 발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인천교사노조에서 적극 나서서 아이들 생활지도에 따르는 어려움을 기꺼이 공유해주시고, 더 나은 생활지도 방안을 고민해주시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발판 삼아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방안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얘기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부모들은 문제적 사안이 발생할 때면 법적 소송 제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위축되어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 끝에 얼마 전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다 싶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몰아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들도 함께 들려옵니다. 완벽한 논점이탈입니다. 교

권과 학생인권은 어느 하나의 권리를 제한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로섬 게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사안과 맥락에 따라 계속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 대신에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 아이들이 점차 폭력의 언어에 기대어 교사와 소통하고, 학부모님들은 법의 언어에 기대어 학교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이 내려져야 합니다. 정서적·심리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법적·제도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학교 너머 가족과 지역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마다, 학생마다 갖고 있는 문제의 복잡한 원인을 무시한 채 개별 아이들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처벌만이 남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나 상담은 아이들에게 부정적 낙인이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충분한 시간과 전문적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과 행정 업무만으로도 바쁜 교사가 아이들의 성장통을 세심하게 살피며 함께 견뎌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교사들과 다른 여러 교육 주체들이 보다 나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의원 강민정

축사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입니다.

가을 노을이 그리워질 것 같은 11월에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20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 자료집 제작 및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시 교사들의 교권 향상과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인천교사노동조합의 김혜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20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천의 평범함 교사들이 모여 학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창립한 단체이며, 2년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번 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 자료집 제작 및 발간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

축사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인천교사노조의 「2023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북」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벌써 2022년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등교를 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잠시 대면하지 못했던 시기의 그림자가 교실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전과 같고도 다른 장면들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한 명 한 명 개별로 지도해야 할 일, 학생들이 가지고 온 고민 보따리를 같이 들어주어야 할 일, 학생의 가정과 소통해야 할 일들이 이전보다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런 장면들 속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다양한 모습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측하지 못한 과정과 결과에서 그 노고가 빛바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 과제는 지금까지 아무도 풀어본 적이 없는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의 여러 상담 사례를 모으고 전문가의 조언을 모아 만든 본 자료집은 목마른 학교 현장에 옹달샘이 되어 줄 것이라 봅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도움의 손길을 만들어 주신 분들의 노고가 우리 학교 현장에 안전한 안내표를 제시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발맞춰 앞서 걸어가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여는 글

교사와 학생의 상생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여는 글

교사와 학생의 상생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2022년 12월 8일,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에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이 신설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국 교사 서명운동, 2차례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사안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여러 매체 등을 통해 공론화되었습니다. 국회도 언론을 통해 교권침해 관련 파행사례들이 수차례 공론화되자 생활지도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수업이나 교육활동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곤 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사회보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교사들과 사제지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수업에 참여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효과적인 법적 방어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교사들이 교육과 교사 생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굳이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어서 심지어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조기퇴직을 선택합니다.

교권침해는 다수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권교육의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교권 인식은 현장 교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 학습권이 존중되고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또한 존중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중요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 할 것입니다. 과거는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교사를 스승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스승으로 여기며 예의를 갖추어 교사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에 대해 지식 정보를 사고파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 소비자, 학교와 교사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와 일부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고용주이고 교사는 피고용인인 것처럼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국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학생폭력 사안 대처, 정규수업 외 돌봄 활동, 코로나 학교방역 참여 등 학교에서 교사가 감당할 교육 외적 업무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부당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해 인격적 모욕을 하였을 때, 이를 제지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려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노조는 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법의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에서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학칙(안) 마련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설 때입니다. 여러 교원단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하위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제작에 우리 교사노조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법령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도록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현재의 비교육적 상황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 교사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교권 전문 교사가 알려주는!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별 대응법

사례) 2022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 공모전 재구성

TIP) 왕건환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보호팀장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교사119 이럴 땐 이렇게> 대표저자

티처빌 원격연수 <위기의 교사를 구하라, 교사119>, <위로와 격려로 다시 쓰는 교사 위기극복 가이드> 대표강사

공저 -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티처빌 원격연수 및 단행본

- <지혜로운 교사는 교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 분석 및 역량 강화방안 연구> 외

감수) 이나연 (교사노동조합 전문 변호사)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변호사

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공저 - <유퀴즈! 안전한 학교생활>

교사 관련 소송 양상 및 대응

왕건환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황봉이 (용인심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교권 전문 교사가 알려주는!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별 대응법

왕건환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사례: 인천교사노조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 공모전 재구성
- 감수: 이나연(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 인천교사노조 교권팀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 두 달 동안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고충 사례’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궁금한 점’을 공모하였습니다.

인천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 중 겪으신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공모전에서 제출된 사례 중 현장 교사들이 공감하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날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다소 누락되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각 사례별 대응법은 교권 전문가로 오래 활동해오신 왕건환 선생님께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인천교사노동조합 교권팀과 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인 이나연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대응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노조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인천교사노조 교권팀

첫 번째 사례. 특수 학생을 괴롭히는 아이, 자기 아이만 미워한다는 학부모 / 초등학교 교사

□ 상황

- 초등학생 A는 같은 학급의 특수학급 학생을 놀리고 구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 A의 학부모는 A의 괴롭힘을 만류했던 학생들을 지목하며 그 학생들이 A를 집단적으로 따돌린다고 교사에게 항의함.
- A의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해도, 교사와 학생이 모두 자신의 자녀만 미워한다고 인식하고 비난함.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담임교사는 모든 활동에서 A학생을 특수학급 학생과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함.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이 거듭될수록 A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멀리 하게 됨.
- A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다고 집에서 울며 호소함. 학부모는 교사를 원망하고 교육청에 찾아가겠다고 함.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행동 교정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음. 가정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학부모를 소환해 해결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학부모의 무례한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협박, 무고, 반복성 등의 위법성이 강하다면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학부모의 반복적인 부당간섭과 무례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피해 교원 보호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특수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학교가 미숙한 대응을 보이면, 학부모는 학교를 압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 교사 개인의 지도 범위를 넘었다면 학폭위, 교보위, 생활교육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식 절차에 따라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법원에 통고하여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소년원 등의 보호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 특히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생활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사 개인이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은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 경고부터 중징계까지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해 설 >

민원 자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학부모의 심정에 공감해주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그릇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찌면 가장 쉽고 바람직한 방법이고, 절반 이상은 이렇게 해결될 것입니다.(대재앙을 막는 학부모 상담법 <https://blog.naver.com/kinkaji/222682598452>)



<대재앙을 막는 학부모상담>

하지만 협력적 관계 구축이 끝내 실패한 이후의 대처를 관련 법령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담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자기 아들만 미워한다, 선생님이 매일 혼만 낸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무례하긴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학부모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부모의 주장 중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악성민원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의 말에는 교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내 자식한테 잘 하라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무고죄로, ‘교사 못 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실제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학부모의 권리입니다. 학부모가 담임-부장-교감-교장 등에게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내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개인적 주관에 따라서 과거의 지도 방식을 기준으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공교육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라고 할 것이고, 선생님은 관련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좀 귀찮은 절차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형성된, 사회 전체의 민원 대응 체계 중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관리자가 교사에게 부당 행동을 했을 때도 비슷하게 적용되므로 어느 선까지는 양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악성민원 등 부당간섭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면?

하지만 보호자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형사처벌까지 검토해볼 만합니다. 관련 기록을 구체적인 단어로 세세히 기록해두시고, (예: 교육청에 찾아가겠다(x) < ‘교육청에 고발해서 교사를 못 하게 해

드려야 정신 차리시겠어요?’라고 말했다고 기록(O)) 음성 녹음과 문자 기록을 잘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 행위를 보고 받은 관할청(교육청)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 15조④**) 교원에게 고소하지 않을 것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한다면 해당 관리자 등은 은폐, 축소 등으로 인하여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원이 직접 고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으니, 관할청을 통해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개인이 아닌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의 과반수가 판단)이 판단하였다면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학부모에게는 침해행위 중단 권고를 할 수 있고, 피해교원은 보호조치로서 특별휴가, 전문상담 및 (정신과 등)치료비 지원, 피해교원 요청에 따른 학급 교체 또는 비정기 전보, (공무상)질병휴가 또는 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침해임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간단한 절차로 시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침해교원으로 인정받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에 관련 설명을 충분히 넣고, 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선을 넘었다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병행해야 함

이 사안에서 아쉬운 점은, 특수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정식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처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정식절차를 밟았다면 학부모와 진실 공방 등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조사와 학부모에 대한 연락도 담임교사가 아닌 학폭 책임교사나 담당 부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일에 고초를 겪을 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크게 2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첫째는 당연히 교사 스스로 교육적으로 학생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둘째는 교사의 지도 범위를 넘어서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집단지성과 제도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사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마련된 제도가 교내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최소 교육적 지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까지 결정합니다. 학부모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학부모가 상담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처분할 때 학생의 특별교육 처분과 함께 학부모 특별교육을 결정합니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수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경미한 수준이라 해도 확실히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함께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추가 악성민원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학부모 특별교육도 1시간 1회 정도 최소한으로만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사노조에서도 계속 교섭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각종 위원회로도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학생에게는 소년법 적용

폭력 행위가 심각하여 교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지도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위 등을 통해 특별교육이나 전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폭탄돌리기라는 비판도 맞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적 가능성을 넘어서 비행 학생으로 만10세 이상이라면 법원에 통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범으로서 사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지도가 어렵다면 법원에서 관

리하며, 보호관찰관이나 감호시설의 전문가가 붙고, 너무 심각하다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법체계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현재 소년법의 숫자에 비해 보호관찰관, 감호시설, 소년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후유장애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비행이 아니라면 소년원까지는 가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누적된다면 점점더 강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한두 번의 지도로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우니, 이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민원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교육적 지도와 법규적 조치를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침착하고 의연하게, 심각한 사안이라면 정말 교과서적으로 대처하셔야 아동학대 시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선생님이 신고된다면, 현재로서는 이 무지막지한 법으로 인하여 선생님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십니다. 선생님께서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사노조와 계속 상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 욕설, 비방, 교사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학생

/ 초등학교 교사

□ 상황

- 초등 고학년 담임 학급에서 몇몇 아이들이 분위기를 많이 흐림. 수행 평가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 맘에 드는 사람만 A야’라며 큰소리로 불만을 얘기함. 질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말하라고 해도 ‘그런 적 없는데요, 너 들었어?’라며 아이들을 부추기고, 교사를 놀리는 노래까지 만들어 다른 반 아이들까지 선동하여 부르게 함.
- 타 교사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함. 수업 중 종이 비행기 날리기, 옆 사람과 큰 소리로 불러 수업 방해하기, 선생님 말투 따라하기, 갑자기 동화책 큰 소리로 읽기, 쳐다보면 노려본다고 해서 덜 보면 선생이 학생을 보지도 않는다고 함.
- 교사가 지나가면 뒤에서 몇몇 학생들이 때리는 흉내를 내며 태권도 연습이라고 하고 일부러 세계 뛰어와 부딪히기도 함.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회복적 생활지도를 지향하며 연간 100회 이상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눔. 학부모님들께도 시시콜콜 연락드리며 소통하려 하지만 바쁘고 귀찮아하셔서 싫은 티 팍팍 내고 모든 것을 담임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음.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 뒤쳐진 건가 하는 내 탓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변화에 발 맞춰야겠다고 다짐함.



1번 사례 답변 참고

- 불편하더라도 선을 넘었다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각종 위원회로도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학생에게는 소년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 교사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행위는 ‘폭행’으로 단순 비아냥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필요한 비행입니다. 교보위를 통해 학급교체와 전학까지 심의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 지각 지도 과정에서 욕설하는 학생 / 고등학교 교사

□ 상황

- 아침 조회 시간 잦은 지각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거친 욕설과 행동을 보임.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학생은 평소 지각, 교문지킴이 선생님과의(전동킥보드, 월담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잦음.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의 지각 사유를 묻자 오늘도 교문지킴이가 시비를 걸었다며 담임교사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함. 동시에 앞에 있던 의자를 세게 발로 차서 교사 쪽으로 넘어짐. 학생이 복도에서 크게 흥분해 소리를 질러 옆 반 선생님들이 나와볼 정도였으나, 아무도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못함. 결국 학생의 지각을 시정하기 위한 생활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흥분상태를 달래고 진정시키는 형태로 대화가 마무리됨.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학생의 잦은 지각, 교칙 위반과 같은 소소한 잘못들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없다는데 늘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낌. 또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 위협을 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 방법이 없음.



생활지도 및 상담 TIPS!

1번 사례 답변 참고

- 불편하더라도 선을 넘었다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각종 위원회로도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학생에게는 소년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 교사에게 폭력, 위협했을 때는 학생에게 과잉 대응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생의 비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녹화 등으로 증거를 남긴 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징계조치(교내봉사~퇴학), 심각한 폭력의 경우 경찰 신고나 통고를 통해 소년법 상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교칙에 의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왜 나만 잡아요?”

/ 고등학교 교사

□ 상황

- 학교 규정을 안내하고 이에 벗어나는 경우를 체크하였는데, 학생이 왜 자신만 체크하냐며 항의함. 이에 시야에 벗어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못 본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면 똑같이 체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불만을 품음.
- 이후 수업시간 등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사용함. 타 학생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함.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도에 잘 따라오는 편이나, 몇몇 학생들은 지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품음.
- 학교 차원의 지원은 특별한 것이 없음.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음.
- 아예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미련이 없는 학생들이 대놓고 교사들의 지도에 불응하게 되면 더욱 난감함.



1번 사례 답변 참고

- 불편하더라도 선을 넘었다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각종 위원회로도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학생에게는 소년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 학교가 정식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교칙 적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야 할 텐데, 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업무분장이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교원 간 소통이 원활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교사노조와 상의해 주세요. 조합원들이 큰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

※ 생활지도 시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 “불법의 평등”

“왜 나만 잡아요?”라고 불응하는 학생이 있다면,
‘불법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기회!

첫째,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불법행위자가 다른 불법행위자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을 단속하지 말라는 식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은 합법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불법의 평등을 명확하게 부정한 바 있다(2012헌마776 참조).)

둘째, 우리는 인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모든 불법 행위를 완벽하게 단속할 수 없다. 모든 불법행위자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경제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불법 행위자들 중 일부만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출처(참고) : 법조신문([나는야 공공기관 변호사]불법의 평등)

- 인천교사노동조합 교권팀

다섯 번째 사례. 교사지시 불이행, 수업 방해 / 초등학교 교사

□ 상황

- 교사 지시 불이행 및 수업 방해
 - 수업 중 돌아다니고 착석 거부, 교실에서 실내화로 갈아신기 거부, 공부하기 싫다고 복도로 나가 난간 손잡이에 앉는 등 무단이탈과 위험한 행동, 착석과 정숙을 요구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 때림. 수업 시간 게임 활동 시 실수를 한 학생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름.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학생과 수시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타인을 탓하거나 거짓말, 변명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개별적으로 달래거나 격려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기본적인 학급 규칙을 지키도록 함. 예를 들어, 학생이 좋아하는 동물 이야기로 분위기 환기하기, 공부 조금만 하고 쉬자고 이야기하기, 그림을 잘 그리니 이번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 등.
- 학부모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위험한 점 등에 대해 대면 1회, 전화 상담을 수시로 함. 상담이 거듭될수록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점이 걱정스러워 최소한으로 상담을 함.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지시불이행 및 수업 방해 학생으로 수업 진행이 되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학급 학생들이 안타까움.
- 폭력적인 상황(학급 학생, 담임교사 구타)과 폭언 등에 타 학생들이 노출됨.
- 학부모와 여러 차례 상담하였으나 후속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음.
- 싸움이 발생하여 담임교사와 타 학급 학생들이 해당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라고 민원을 받았을 때 허탈함과 무력감을 경험함.
-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스럽고 방어적으로 학급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



정말지도 및 상담 TIPS!

- 학부모 상담, 1-2-3 매직, 긍정훈육(PDC), 비폭력대화(NVC) 금쪽 처방 등에서 나온 방법 중 가능한 것들을 시행해 보세요. 시행해 보는 과정에서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해두세요.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다른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 과정에서 상당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학생 행동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녹음, 녹화 등 증거를 남기시며 해당 학생을 최소한 전학조치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시고 특별교육 조치를 부과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하십시오. 각종 증거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극단적 경우에 대비하십시오. 특히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폭행이 있다면 최소한 특별교육, 전학,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까지 대비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현재 아동학대 관련법과 절차가 무지막지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선생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아동학대 대비법> 참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아동학대 대비법>

모든 학생 및 학부모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증거를 많이 남겨두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조사관이 나올 경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 의견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들도 모두 일부만 녹화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방법들로 하셔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항상 녹화되고 있고, 한 장면만 떼어놓고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객관적으로 선생님의 언행을 돌아보며 생활하신다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의 지도 내용을 녹취하여 검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교육 활동 침해를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학교 애들은 안 그렇다, 나는 애들이랑 친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교사니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학생과는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거리 1-2m를 유지하십시오. 단들이 있는 상황을 피하고, 교육학이나 상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교육적이고 따뜻하게 말하며 그래도 불응하는 학생이 있다면 언행을 명확히 기록하여 위원회에 올릴 근거로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건 neis 행동발달 누가 기록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2. 응급처치 상황이 아닌 이상, 학생 몸에 스치지도 않아야 합니다.
3. '남, 여' 관련 단어, 비속어, 학생들끼리 농담으로 쓰는 말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4. 교칙 또는 법규에 명시된 것들만 교육학 교재나 교과서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5. 위의 내용을 어겼다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이의 제기를 당하면 시비거리가 늘어나면서 결국 선생님이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게 둘러대지 말고 즉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학부모가 방임하는 아이, 교사의 역할은? / 초등학교 교사

□ 상황

- 부모의 아동 방임으로 형제가 등교를 잘 하지 않음.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A 학생이 정시에 등교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 거의 매일 학부모에게 통화를 시도하지만 매번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함.
- 2학기 개학 후 등교하지 않아 출석 독려 후 가정 방문하였으나 문 열어 주지 않음. 수 차례 방문 후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이들이 옷도 입지 않고 위생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수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 수업 시간에 욕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A 학생의 어머니임. 교실로 따라들어와 난동을 부림. 학급 아이들이 모든 상황을 긴장한 상태로 지켜봄.
- 다음 해 경찰서,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A학생 형제와 관련한 협의 회를 열었음에도 제도적으로 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끝남.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음.



생활지도 및 상담 TIPS!

교사는 법규에서 정해진 범위의 의무를 다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동요되어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학부모가 100가지를 잘못했어도 교사가 1가지를 잘못하면 교사는 징계나 형사처벌당하기 쉽고, 학부모는 별 처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보호자라면 교사를 고소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집요하게 괴롭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침해를 일으켜도 학부모가 신용불량자나 기초수급자라서 변제 능력이 없어서 교사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소송비라도 보전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 어려운 과정이고, 교사에게는 심리적 피해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교보위를 통

해 교육청으로부터 치료비용이나 휴가 등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마땅히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받아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학대가 심각한 친부모 보호자는 어찌지 못하면서, 2021년 기준 재학대 사례가 1건도 없는 교사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에서는 각 지역노조와 함께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도 교섭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 학부모의 잦은 연락,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 초등학교 교사

□ 상황

- 초교 여학생의 민감한 교우관계(틀어짐, 외톨이, 이간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도할 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해결 방법을 담임 교사에게 계속 요구함.

□ 상담(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학부모의 지나친 잦은 연락으로 온갖 하소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느낌.

□ 상담(민원 응대)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 믿고 지켜보는 교육적 방침이 학생을 방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나 자기 검열했던 게 씁쓸함.
- 아이들의 사적 영역에 원치 않게 개입하게 되었음. 학부모의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공격받지 않을 매뉴얼이 필요함.



생활지도 및 상담 TIPS!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2022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공무원 상황에 맞게 **특이민원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인들은 학교폭력을 크게 2종류로 나눕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비행형과, 형법상 처벌에는 이르지 않을 인성형입니다. 여학생의 민감한 교우관계 문제는 인성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학폭법에서는 이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사안 조사 후 분쟁조정 과정을 거치거나 학폭위를 통한 조치를 받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교육전문가라면 그 절차로 대부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임을 예상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권유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 등의 절차를 원한다면 절차대로

진행해줍니다.

학폭법은 사회에서 학교를 불신하여 만든 부분이 큼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 구성원의 판단이 아니라 지원청 단위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조치를 내리라는 것이 현행 심의 위원회의 주요 취지입니다.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겠다면, 기어코 지원청 학교 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조치 없음’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전화로 일과 후 오는 전화는 수신차단을 하셔도 되며, 일과 중 이메일이나 학교 전화 등 정해진 시간과 방법으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사에게 지나친 연락과 하소연 등은 모두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경청과 공감, 메모를 하며 ‘아까 그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면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신데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와 같이 통화를 종료하셔도 됩니다.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2.07.27.), 21쪽.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 관련 매뉴얼

○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30분 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1단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장시간 전화상담 곤란 안내 등</p>	<p style="font-size: 1.2em; color: #003366;">🔊 [20분 이상 통화] 장시간 전화상담 곤란 안내 및 용건 위주 질문유도</p> <p>» 선생님, 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민원인이 계셔서(혹은 다른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2단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통화 종료</p>	<p style="font-size: 1.2em; color: #003366;">🔊 [30분 이상 통화] 통화 지속 곤란 안내 후 종료</p> <p>»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 처리를 위해서(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민원인이 계셔서, 먼저 접수된 다른 민원 처리를 위해) 통화를 종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부서장은 장시간 통화를 한 부서원에게 15분 내외의 휴게시간 부여 가능

반복 전화

※ 전화통화로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동일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통화 곤란
안내 후
상담 종료

통화 곤란을 설명한 후 상담종료

» 선생님, 말씀하신 민원은 설명 드린대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답변 외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다른 민원 처리를 위해 통화를 종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장은 반복 전화를 한 부서원에게 15분 내외의 휴게시간 부여 가능

핵심 대응 요령

장시간 전화상담 등 곤란 안내 및 용건위주 질문 유도

☞ 전화통화로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통화 곤란 안내 후 상담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 **공직자 전화응대요령이 더 궁금하다면?! 참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개정) 2022.07.27.등록」(16~21쪽)

III. 특인민원 응대요령

1. 전화응대요령

- 1-1. 폭언(욕설, 협박 등)
- 1-2. 성희롱
- 1-3. 상급자(기관장 등) 통화요구
- 1-4. 전화응대 중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 1-5.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링크’ 및 QR코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93603



여덟 번째 사례. 전학 간 학생이 찾아와 위협할 때 / 중학교 교사

□ 상황

-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강제 전학 간 A군이 교내 교실 앞으로 찾아옴. 방문 목적을 물었으나 도주함.
- 그 학생이 온 이유를 수소문해보니, A가 본교를 다닐 때 다툼이 있었던 타 학급 학생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겁을 주려고 아는 형을 대동해 찾아온 것이라고 함.
- 타 학생에게 다툼 과정을 듣고, 서로 조금씩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하여 돌려보냄.
- 타 학생이 나가고 A군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수 차례 가래 긁어 빨기, 말장난, 조롱, 반말, 입에 담기 힘든 갖은 욕설 등을 퍼부음.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고, 이에 여러 가지 조치 방안을 찾아봄.
- 본교 학생이 아니라 교권이나 선도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방법은 모욕죄 신고밖에 없었음.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얘기를 들은 학부모는 ‘사과’ 문자를 보내 옴. 그러나 직후 A군이 다른 학생 폰으로 전화해 ‘욕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며 조롱하듯이 이야기함.
- 두 번째 전화에 더욱 모욕감을 느꼈고, 이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임.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생활지도 담당으로서 A군과 A군의 무리를 수차례 지도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선도위원회를 가볍게 여기며 특히 A군은 선도위원회 자리에서도 예의 없는 행동을 수차례 함.

□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 고충

-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보람을 느끼며 만족감이 높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낌.
- 갈수록 A군과 비슷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 차례 깨닫게 됨.



생활지도 및 상담 TIPS!

겁을 주러 집단으로 찾아온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폭법에 따라 전담기구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모욕 사실 등을 전출 간 학교에 알려서 그 학교에서 선도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학교 위원들의 소관입니다.

녹취가 없어도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면 신빙성이 있어 증거로 채택 가능하지만, 모욕죄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른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나 법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고하여 경찰에 신고나 수사기록이라도 남기면, 그 학생들이 다른 일로 다시 신고당할 때 조치가 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마땅히 할 수 있으며, **교원지위법 15조에는 교육청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본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사는 교권 보호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비용 등을 교육청에서 보전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그간 헌신적으로 지도하며 많이 소진되신 것 같아 자기 회복을 위해 업무나 수업지도 부담을 좀 더 줄이시고 회복에 우선 전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름 번째 사례. 일과 후 잦은 연락, 다른 아이들과의 분리를 요구하는 학부모 / 공립유치원 교사

□ 상황

- A유아의 학부모가 집에서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수시로 담임교사에게 저녁시간에 전화하여 고성을 지르고 당장 찾아오겠다고 위협함. 수업 중 자신의 아이를 친했던 몇몇 친구들과 분리해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함.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을 설명하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지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함. 또 유아가 불편한 점에 대해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사과받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안하였으나, 학부모는 아이의 추후 또래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함.
- 담임교사의 고충이 커서 관리자도 개입을 하긴 하였으나 부적절한 방식과 언행으로 상황이 더 악화됨. 이로 인해 담임교사의 고충이 더욱 심각해짐.

□ 상담(민원 응대) 과정에서 경험하신 교사의 고충

- 교사를 서비스제공자로 여기는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 시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학부모가 교사와 대화를 통해 아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교사에게 따지고 화풀이하고 고성과 위협, 무시, 소외 등으로 굴복시켜 자기 말대로 하게 만들려는 태도를 겪을 때가 많음. 그럴 때마다 매우 슬프고 억울하기도 하고 모욕적임.
- 관리자의 질책과 모욕적 언행에도 상처를 많이 받음. 그런 일이 크고 작게 반복되다보니 나 자신이 소진되고 있음을 느껴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음. 그러나 어디에 고충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음.

□ 상담(민원 응대)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꼭 반영(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악성민원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서 차단 및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일과 후에는 전화를 받을 의무도 없고, 교사 개인의 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설명하면 되고, 3회 이상 반복 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폭언 시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 p.22~ 대면응대 폭언(욕설, 협박 등)을 적용하여 대응하며, 합법적으로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심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관리자가 교권 보호조치에 소극적이라면 직무유기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 비용이 아니라 교육청으로부터 몇몇하게 비용을 보전받으실 수 있고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직무유기나 갑질 신고, 감사요청 등으로 시정하게 해야 합니다. 과정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누군가 나서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교사노조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개정) 2022.07.27. 등록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40&nttlId=93603



※ 참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2.07.27.), 22-23쪽.

2 내면응대

2-1 폭언(욕설, 협박 등)

1단계

진정 및 동료직원 도움 요청, 필요시 녹화 실시

진정 요청 및 동료직원에게 도움 요청

- » 선생님 화가 나시겠지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 (진정 요청 후) 즉시 주변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돌발상황 방지를 위해 본인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로 녹화·녹음 실시** 후 주변 동료직원에게 도움 요청
 - * 담당자 우측(1순위) 좌측(2순위)
 - ** (고지 멘트)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급 시 생략 가능)
- (폭언 중지시) 정상 응대

2단계

비상대응팀 대응

비상대응팀 업무분장에 따라 신속히 행동

- 비상대응팀 직원별 역할 수행
 - ※ 비상대응과 동시에 상담자 등이 경고멘트 실시 및 적극 개입하여 추가 피해 방지
- (폭언 등 지속 시) 경찰 신고 또는 퇴거 조치*(불응시 경찰 신고)
 - ※ 퇴거 조치는 멘트로만 통보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비상대응팀 대응요령(예시)

- (팀장) 민원인 진정 및 경고, 퇴거조치
 - » 선생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과, 욕설을 계속하시면 위법행위로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화(녹음)을 실시하겠습니다.
- | 폭언 등을 지속할 경우 |
 - » (경찰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민원응대를 중단하겠습니다.
 - » (퇴거조치 시) 폭언 등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민원 응대가 어렵습니다. 민원실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에 불응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료1~2) 팀장 지원
- (동료3) 녹화·녹음 실시 ※ 휴대용 보호장비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 등 활용
- (동료4) 타 민원인 대피
- (동료5) 안전요원 호출, 경찰 신고

3단계

상황 보고

📞 [상황 종료 후] 부서장에게 보고, 부서장은 피해공무원 면담 및 상태 판단(휴식 조치 등)

- 담당자는 [참고1]의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및 부서장 보고
※ 상황에 따라 구두보고 후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심적 고충이 클 경우에는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 부여(필요시 추가 부여)
※ 부서장은 피해공무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시 민원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4단계

부서장 대응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법적 조치 관련 유관부서 협의 등

- 녹화 녹음파일 시청(청취) 및 상황파악,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검토
- 서면 경고문 발송(우편, SMS)
-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사항 등에 대해 유관부서 협의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III 특이민원 응대요령

핵심 대응 요령 부서 차원에서 2차 돌발폭력 방지 및 후속조치(경찰신고, 법적조치 등)를 통한 경각심 부여

유의 사항

- ✔ 비상대응팀 대응 시 민원인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민원인과의 사소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 응대 시에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폭행·성희롱 등)로 인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 전담부서 지정·대응,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지원 등 기관(법무부서 중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 ✔ 부서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가 아닌 개인 소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촬영 등을 할 경우,
 - 각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상·음성 파일을 철저히 관리

열 번째 사례. 교실에서 성관계가 연상되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학생
/ 고등학교 교사

□ 상황

- 시험을 앞두고 자습을 준 상황에서,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 친구랑 모텔에 가서 ~’ 등 성관계가 연상되는 이야기를 하며 킁킁대고 웃음. 교사를 대상으로 한 희롱은 아니었고, 본인들은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으며, 가까이 있는 학생 몇몇 정도만 들릴 정도의 소리였음.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대화 내용이 정확히 들린 상황이 아니고, 유추만 되는 상황에서 ‘조용히 하자’ 정도의 지도만 할 수 있었음.
- 수업 중(자습 포함) 성적인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 제지해야 할지,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함.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성교육 등의 지도를 해야 했던 건지 자괴감이 들고, 동시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옴.
 - 교실에서 성적인 단어, 성적인 가사의 노래 등을 타인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함.



피해자의 수치심에 대한 치유, 가해자의 재발 방지와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희롱 사안으로 학폭위 또는 교보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조롱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분히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교육을 평소에 제대로 하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안 발생 시 은폐 축소 없이 정식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위법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90년대 말부터입니다. 여전히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지도조치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 주위에 몰려들어 성추행을 하고 교사가 반사적으로 따귀

를 때리자, '학생은 징계받고 말 건데 교사는 학교 떠나게 해주겠다.'고 압박하여 교사가 전보를 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시비에 엮이지 않으면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학교급을 막론하고 성희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성이라도 주위 학생 중 한 명이라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며, 교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조롱에 휘말리며 더 큰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켜고 주머니에 넣은 후, 교무 수첩이나 아무 종이라도 자세히 메모할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이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평소처럼 진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소같지 않으면 잠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진정합니다. 1~2분으로 진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한테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읽고 풀라고 하든지 자연스러운 지도를 한 후, 스스로 호흡과 맥박, 피부의 열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진정된 상태에서 지도하여야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학생의 잘못에 초점을 두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되지 않았다면 교사는 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생이 크게 반발하며 교사에게 상처를 주고 교사의 언행 중 일부를 트집 잡아 아동학대 신고로 번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바로 지도하기 어려우면 수업 종료 후 교무실 등으로 불러내고 여러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해당 학생 앞 2m 정도로 가까이 갑니다.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선생님을 공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리입니다. 선생님이 심리적으로 안전을 느낄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 빌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 지도 상황에서는 방심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팔이 닿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 공격해 오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학생의 의자나 책상 등 교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추가 구조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학생의 정면에서는 것보다는 45도 정도 대각선 위치에 서는 것이 상대의 흥분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학생 1명을 지도하면 아동 정서학대 시비의 빌미가 됩니다. 여러 학생 앞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하시길 권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도하려는 선생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크다면 복도나 상담실 등 다른 학생들에게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불러낸 후 1:1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수업 종료가 임박했다면 종료 후 다른 교사들이 주위에 있는 교무실 등으로 불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면 교실 출입문이 보이는 복도 구석에서 말씀하셔도 교사에게 큰 귀책 사유가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교실 내에서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 또는 안전사고가 난다면 자리를 비운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학생에게는 혼내듯 다그치는 것보다는, 스스로 말한 것들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친구랑 모텔에 가서 ~ ' 같이 성관계가 연상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니?'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1) '선생님한테 한 것 아닌데요? 왜 남의 말을 엿들으세요?' 라고 사실은 인정하는 의미가 담긴 대답을 하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거나, (2)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냥 여자 친구랑 놀러 갔다는 얘기 한 건데요.'라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겁니다.

(1)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경우

학생이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해도 교사에게 도달되며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반성하면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학생이 수긍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 한번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 교사가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말의 내용이 심하다면 확인서를 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명백히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서와 관련 사실은 누적하여 보관합니다. 이 문건이 불필요하게 유포되면 교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내 성고충상담원(학교마다 남녀 1명씩 지정됨. 보통 교감, 보건교사, 체육교사, 담당부장 등), 믿을만한 선배 또는 동료 교사, 생활지도 담당(부장)교사, 학년 부장 등에게 공유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집단이고 교사는 개인이 아니라, 교사도 협력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교사에게 누적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교원 및 침해 학생 조치를 하기 수월해집니다. 선생님 혼자서만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면, 개최되더라도 위원들이 느끼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의 정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2)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교사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모를까, 말한 사실조차 부정한다면 좀 더 지도가 어려운 학생일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까지만 기록합니다. '여자 친구랑 어디 놀러 갔다고 말했다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함부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을 주의주

고 관련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리한 후, 위에서 말한 성고충상담원 또는 동료 교사에게 상황을 공유합니다. 교내의 많은 교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더 많은 확인서과 증거가 축적될 것입니다. 선도처분 또는 성희롱과 거짓말 등을 반복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열어 (1)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교육 표준안조차 확립되어있지 않으므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성폭력 가해 피해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힘겹게 수습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3이든 성교육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처리나 지도 절차는 같지만, 저학년이라면 남들이 불쾌해할 만한 말은 하지 말도록 개념 교육 위주로 가시고, 그런 교육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위원회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다면 선생님의 전문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건 피해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원회를 거친다면 더 많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더 무너지면 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장치가 더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교사노조가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희롱 하나 대처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에게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을 한다면, 주변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교권 침해까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존감을 지키고, 학생을 위하되 정도가 심하면 위원회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시점입니다.

열한 번째 사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때 / 중학교 교사

□ 상황

- A 학생의 몸에 누군가에 의한 구타(졸림)의 흔적이 있고, 학생의 부모가 가해한 사실을 인지함.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방법 및 유의점이 있는지 궁금함.
- A 학생 부모는 평소에도 통화 중 고함을 치거나 폭언을 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 후 안전이 걱정됨.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함.
- 학생의 부모가 전화하여 당신이 신고했냐고 물었으나, 아니라고 응답함.



생활지도 및 상담 TIPS!



법제처

easylaw.go.kr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제1항).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동학대방지법은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강력해진 것은 가정에서의 학대로 매년 영유아 40여 명이 사망하며, 심각한 학대를 받으며 자라는 건 최소 수백 명이 넘을 것이고, 이들은 또 다른 강력범죄자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똥이 잘못 튀어 신고 의무자인 교사들이 오히려 형사처벌과 해직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교사는 작은 잘못으로도 수 개 월 이상 범죄자 취급을 받지만, 정작 심각한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아동이 죽거나 불구가 될 정도가 되어야 경찰이 개입하고 분리 조치하는 현실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관련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매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전반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부실함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52,083건이며, 그중 37,605건(72.2%)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였고, 13,945건(26.8%)은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판 판결을 받은 건은 보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위반 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을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처분 1,874건, 형사처벌 316건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에서도 95%는 재판을 받지 않고, 조사 후 학대 아동이 가벼운 주의를 받은 후 가정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5,294건(전체 중 96%)이며, 유·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재학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신고하신다면 그 부모가 재판을 받지 않고 다시 해당 자녀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95% 정도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개선되고 있지만, 신고자 보호가 확실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위기관리 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의 판단을 통해 신고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때는 학부모의 평소 언행에 대하여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악성민원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참고(인천교사노조 단체협약 2022.04.08.)**

인천교사노조-인천시교육청 단체협약(2022.04.08.)			
제53조 ⑫ 교육청은 교사가 아동 학대 의심사건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원장) 명의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	연락처	4208-488

☞ **인천교사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개인이 아닌 '학교장(원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22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 학교용 가이드북[학교생활교육과-3622 (2022.3.16.) 76쪽, 아동학대 신고 시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표시하여 안내함

- 인천교사노조 교권팀

※ **단체 협약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교장이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고 최초 발견자의 신고 의무가 면책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왕건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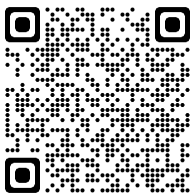
☞ **참고 : <2022 교육부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 80쪽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의 예**

-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아 상담교사에게만 알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책자 -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가 꼭 알아야 할 아동 학대 예방사업 >

※ 참고

학부모와의 상담 시 왕건환 교권보호팀장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kinkaji>) 글 '대재앙을 피하는 학부모 상담법'을 참고 주세요.



<대재앙을 막는 학부모 상담법>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를 한 경우

많은 경우에 교사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신고가 의심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부모 이외의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도 긍정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신고당할 때 아동 학대하지 않고 학생들과 사이가 좋다는 증빙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원평가 평점이나 서술 항목, 평소 수업 활동 사진이나 결과물, 모든 학생들과 주고 받았던 편지 등입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많은 교사들이 신고를 포기하곤 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교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당 부모가 학교에 찾아온다면 반드시 미리 약속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아 오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1:1 만남은 피하도록 합니다. 관리자나 부장 교사와 함께 만납니다. 상대측에서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 녹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선생님께서도 상황에 따라 녹음을 고지하거나, 혹은 만약을 대비하여 녹음하며 대화를 진행합니다. (※참고: 대재앙을 막는 학부모 상담법)

아동학대의 개념은 상당히 혼재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기가 자식 엄격히 훈육하려다 그런 것인데 범죄자 취급했다고 분개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받는 많은 교사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사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한데, 정작 사망 위험까지 높은 친부모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교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대로 했을 뿐, 학부모를 신뢰하며 공감과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가 수업 방해, 모욕, 폭행 등을 계속 한다면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 및 교권보호위원회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무원 민원응대 매뉴얼(구글 검색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사례. 수업 중 정치적 쟁점을 다루게 될 때 / 고등학교 교사

□ 상황

- 모둠 글쓰기(자유 주제) 발표 과정에서, 한 학생이 발표 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및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음.

□ 생활지도 과정 및 대응

-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비하 발언, 원색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지도하고,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지도함. 그러나 추후 정치적 쟁점이 나올 만한 주제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됨.
- 예전에 교과 수업 중 정치색이 들어간 수업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을 받은 적도 있어 더욱 부담함.



생활지도 및 상담 TIPS!

우리나라에서 언급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언급만으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언론과 시민단체, 유튜버를 통해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이하부정관(배나무 아래서는 모자를 고쳐 쓰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감정을 일부 학생들에게 낚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 자신이 존경하거나 비난하는 인물에 대하여, 학생은 무조건 비난하거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교사를 당혹스럽게 만들거나 공격하는 것이 우선일 뿐,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각종 매체나 가정 분위기 때문인지 정치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매우 집착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공격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직접 언급된 텍스트 이외에는 언급을 삼가는 것입니다. 성 관련 주제를 다룰 때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사의 소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교육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 또는 이 말이 번져나갔을 때 언론이나 유튜버에게 공격당할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로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최대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의 평소 언행부터 해당 사안 관련 언행까지 문제가 없도록 자신의 수업 중 언행들을 최대한 녹취하고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교과 관련 내용이라면 교과협의록에 이런 수업을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미리 결재를 받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협의록대로 수업했다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물론, 협의록대로 수업하지 않았다는 공격까지 방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소신을 살리며 수업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나 교육과정과 다르게 정말 편향된 사상을 강요했던 교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편향성 시비를 벗어나 교육자의 전문성과 소신을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수업을 방해하며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비난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상 인물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견해가 학생이 민원을 제기할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참조. 사회 쟁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보이텔스바흐 합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각종 사회 현안이나 쟁점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현안이나 쟁점 자체를 배운다기보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관점을 학생 스스로 정립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교실 수업과 연결해, 사회 현안이나 국제이슈까지 학생들이 수업 주제로 확장하고자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로서 부담이 될 때도 많다.

그럴 때 바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해 보면 좋겠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차이·이견에 대한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역사 문제처럼 사회적·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접근은 절대 필수적이다.¹⁾ 특정 견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원칙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3가지 원칙이 있다.

1. 강압(교화) 금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논쟁성에 대한 요청(논쟁성):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요청은 첫 번째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왜냐하면, 교화는 다양한 관점을 숨기고 다른 선택지들을 내팽개치며 대안들을 해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해관계 인지(행동지향, 학생지향): 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일방적인 주입식 정치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성장시키겠다는 교육의 관점을 철저하게 견지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 합의가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정치교육을 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교육의 우선성'이라는 원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틀이라는 이야기이다.²⁾

※ 참고 - 보이텔스바흐 합의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정치가·연구원 등 학자 등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교육지침이다. 좌우 진영 관계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본래 학교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적용되어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³⁾

- 인천교사노조 교권팀

1)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북멘토, 심성보 외)』, p22

2)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북멘토, 심성보 외)』, p27

3) [네이버 지식백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열세 번째 사례. 학생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뜯어말리면 아동학대?!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 및 정당한 지도(폭언이 아니라 ~하지 말것을 지도할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nA 답변



<석경쌤의 학교사용설명서>

※ 참고 : 학생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교사가 바로 할 일은?

(출처 : 석경쌤의 학교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etpark0301/222630846459>

물리적 개입은 불가피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시비가 붙는다면 정당행위인지를 판단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는지? 학생이 그 과정에서 심리적 굴욕이나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교사나 학부모들 중에는 폭행당하는 학생을 보호하려는 교사가 도리어 폭행당하는 일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사가 교도의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받는 직종이긴 하지만, 교사의 기본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에게 집단 구타당할 위협에 빠진 무고한 시민이 있다고 해서 경찰 혼자 상황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충분히 모든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혼자 뛰어들 경찰도 함께 폭행당할 위협이 큰 상황이라면, 우선 지원요청을 하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도 초기 진화로 끝낼 상황이라면 혼자 뛰어들어서 소화기를 사용하겠지만,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건물 속으로 혼자 뛰어 들어가서 시민을 구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경찰이나 소방은 학교보다는 대응 매뉴얼이 체계화되어있고,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런 기본적인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조차 부족한 것

이 사실입니다.

교사노조연맹 산하 교사노조들은 사설 경호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악성 민원인이나 스토키 등으로부터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 위기 상황 대처와 악성 민원인 초기 대응, 위기 협상, 신고 시 대처 등 교사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교사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처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매뉴얼과 연수 과정을 개발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구타하는 장면 목격 시

1. 긴급 상황이므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멈추기 위하여 큰 소리를 내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때, 짧고 단호하게 말해야지, 비속어를 섞어 쓰면 안 될 것입니다. 교사의 말소리가 학생에게 인식될 정도라면 언어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장 학생이 반성하게 할 정도로 세련된 말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흥분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 너 가만 안 있어? 뭐하는 것이야?! < 멈추고 선생님 보세요 < OO아, 진정해, 진정하세요.(명확하되 차분한 목소리로 하길 권합니다. 교사가 긴장하고 다급히 말하면, 학생은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여기고, 지능이 낮거나 극도로 흥분했다면 교사를 폭행하는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학생이 언제든 교사를 폭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OO이가 화났나 보네? 억울한 부분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얘기해볼래?

2. 언어적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이 폭행에 집중하고 있을 때 : 호루라기, 전자호각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학생의 주위를 분산시켜 때리는 행동을 멈추게

※ 참고

- 교사노조가 사설 경호업체와 업무협약 맺은 까닭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3>



한 후 1번 언어적 개입으로 넘어갑니다. 호각 소리가 학생의 귀 근처에서 세계 들리면 청각 손상을 주장할 수 있으니 너무 귀에 가까이 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주위 분산 전략도 통하지 않고 너무 심한 폭행 상황이 계속되어 물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때 :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2배수 이상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싸움 속에 직접 들어갔다가 교사가 대신 폭행을 당하고 심각한 경우 교사가 골절상을 받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병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p. 94에서도 ‘교사의 안전이 확보되고 학생 긴급 구조를 위한 접촉 등 이해 가능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신체 접촉이 가능함’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대신 폭행당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교사가 신체적 접촉을 해서 교사에게 학생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무죄나 정당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언어적 개입이 불가능한 학생의 폭력 상황 목격 시 교사 대처>

가. 복도, 운동장 등 주위에 CCTV가 있는지 확인, 자신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녹화되고, 일부만 편집되어 유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교사가 빨리 교무실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다른 교사를 호출하거나, 주위의 다른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무실로 뛰어가 다른 선생님을 불러오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폭력에 대한 비상 대응 체계가 생활지도부-배움터지킴이-특수보조원-교감-교장-경찰 등과 미리 협의를 통해 갖춰져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폭력 빈도가 높은 학생이 있다면, 개별화교육위원회(특수학생), 위기관리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에서 미리 회의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교사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하여 촬영 또는 녹음하면서 접근하거나, 주위 학생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신속히 부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라. 교사는 돌발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주변의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을 진정시켜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사를 돕다가 말리던 학생이 다치거나 **교사에게 심각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확신이 없다면 다른 학생들을 개입시키지 말고 바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싸움을 함께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학생이 심각하게 다쳤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사 개인이 배상하거나 징계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폭행당하는 학생 구조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경과실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도록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는 물론, 싸움을 말리다가 다친 학생과 학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며 진정시켜야 하고,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을 기록해주며, 선행상, 모범상 등에 추천하는 등 피해학생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억울함을 줄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 교사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웬만한 무술의 고수라도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영미권의 최신 체포술이나 대응 교범 등도 균경이 과잉 진압 시비를 벗어나기 위하여 세밀한 연구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이 장면을 촬영해서 생중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비하며 행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한 상황임이 주변과 폭행 당사자에게 느껴지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무술 개념으로는 태극권이나 아이키도(‘합기도’의 일본식 발음)에서 주장하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

다’, ‘상대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으면서 화합시키는 기술’을 써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학생의 급소를 때리거나 관절을 꺾거나 넘어뜨리는 것처럼 다칠 위험이 있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공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맞고 있는 학생을 분리해 내거나, 공격이 빗나가게 하면서도 때리던 학생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전문 교육이 매우 부족한데, 핀란드 등에서는 교사들까지 이런 연수를 받고 있어서, 교사노조에서도 국내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과 현재 개발 중입니다. (특히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아동이 다치거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을 진정시키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현재까지 위의 모든 단계를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교하게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년 응급처치 의료기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런 대처 요령까지 익혀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사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덜 당황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력을 기르고, 실질적으로 싸움을 안전하게 말리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무슨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두시길 권합니다. 어디든 가까운 무술 도장, 가능하면 현대적인 호신술에 특화된 태극권, 합기도, 주짓수, 크라브 마가 등의 무술 수련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몇 번이라도 관련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폭행 사안 빈도가 높은 특수교사나 초등 저학년 담당 교사부터 해당 연수를 확산시키는 중이며, 교사노조에서도 경호무술 전문가와 무술 수련 경력이 많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자나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해당 연수를 개발 보급 중입니다.

현재의 판례들을 대략 살펴보면, 학생끼리 심각하게 폭행하여 심하게 다치면 그 책임이 가해 학생 쪽으로 가서 학폭위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교사가 개입하여 피

해 학생을 보호하다가 가해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교사가 무지막지한 아동학대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수개월에서 수 년 간 송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피해 학생 측에서 나몰라라 하여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을 긴급히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위험이 크므로, 한 박자 천천히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가 쌓여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례. 한 명의 수업 방해로 피해받는 학급 전체 아이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한 명의 아이 제재 때문에 벌어지는 다수의 아이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일 착한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만, 우리 애만 혼난다는 그 한 명이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담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2번 사례 참고.
- 문제 학생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교육학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하며 증거를 쌓아도 개선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적어도 특별교육과 전학까지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욕설(1~2회)은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던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사에 대한 학생의 욕설(1~2회)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닌 게 맞나요?



QnA 답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생긴 오판입니다.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은 마땅히 있어야 할 교육청 교권 전문 변호사조차 주무관으로 대체되어 있어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교사에게 욕설한 것은 맞지만 교권침해는 아니다.’ 라고 했다면, ‘술 마시고 도로에서 운전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 같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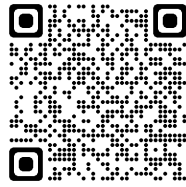
공개적인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미하다면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고, 심각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소년법이나 소년형사재판을 통한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은 너무 많고 소년부 판사는 너무 적기 때문에 욕설 정도로 소년재판이 열리는 일은 매우 드물긴 합니다. 적어도 웹 상에 교사에 대한 욕설을 올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의 경우 소년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잣말로 씨x’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정도의 경미한 욕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개인이 아닌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판단)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고시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매우 낮음(각 1점)으로 판단되고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나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중 하나가 매우 높음, 또 하나는 보통으로 판단된다면 심의기준점수 4점으로 '교내선도-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조차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점이라도 받았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된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피해교원에게는 위원들의 과반수 의견이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나 전문상담, 정신과 등의 치료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p>※ 참조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자료실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list.do?mId=50 '교육활동 보호 핸드북(선생님을 위한 교육활동 가이드)', '2022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포럼 자료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교원용 자료집)' 외 다수</p>	
<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1. 10. 1.]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2021. 10. 1.,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3</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u>」 제15조 제1항 및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형법</u>」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u>제314조</u>(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u>교육공무원법</u>」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p>□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재검토키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열여섯 번째 사례. 교보위 1차 징계로도 ‘전학’ 처분은 어려울까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학생의 징계 결과 점수가 최고점수에 해당하나 (1) 의무교육대상으로 '퇴학' 처분 불가, (2) 1차 위원회 징계로 '전학' 처분 불가, (3)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교체' 불가, (4)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처럼 그 사안이 위중하다면 1차 위원회 징계로도 '전학' 처분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QnA 답변

위중한 사안을 일으킨 학생이라면 다른 일로 또 교권 침해 사안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2차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조치하시면 됩니다.

심각한 범죄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원 통고, 경찰 신고, 고소, 고발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잠을 깨웠다며 교실에서 교사를 흥기로 찌른 고3 학생조차 소년형사처분은 과하다며 보호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학생이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교사노조에서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생생한 사례가 축적되며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법원 통고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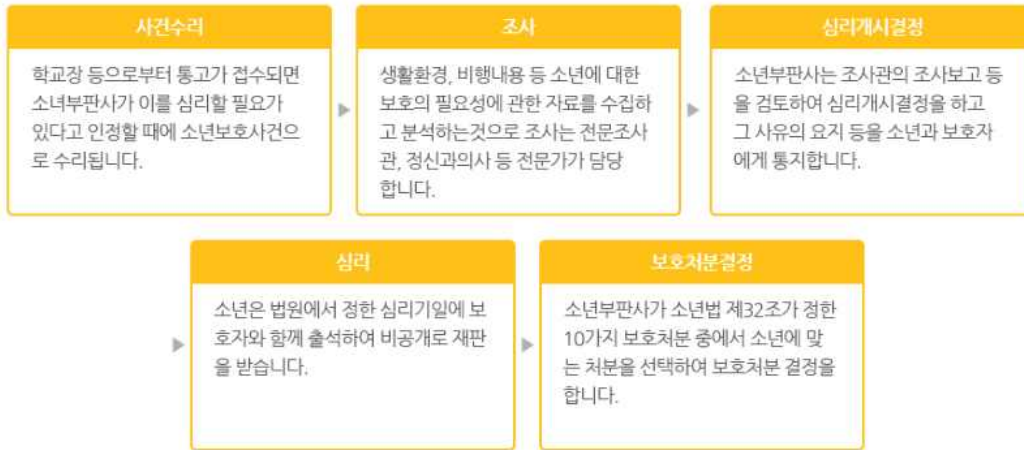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제도의 의의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 통고의 대상
 -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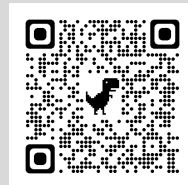
*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7/index.html

[참고] (보도자료) 통제 불능 비행 청소년은 가정법원의 '통고제도'가 효과적, 교권 보호에도 제격 / CIMC뉴스, 장윤진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3>



교권 전문 교사가 알려주는!

교사 관련 소송 양상 및 대응⁴⁾

왕건환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상황1 - 교육활동 중 다친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요구

현장 체험학습이 있어서 출발 전과 도착지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행동이 과격했던 한 학생이 안전교육 내용을 무시하고 무리한 장난을 치다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학부모님은 교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장부터 다른 선생님들까지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까지 합하여 형사, 민사, 행정 소송을 모두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는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고, 고소를 예고하는 통지서에는 우리 학교를 마치 비교육의 온상인 것처럼 폄하하는 글들이 어려운 법률용어들과 함께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자칭 00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상황2 - 온라인 수업 중 욕설

저희 반에 평소 수업 방해 행동이나 비행이 심하여 성심껏 지도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까지 사안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동학대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제가 그 학생을 학대했다는 조사가 진행되었고, 몇주 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로 오라고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을 남들이 없는 곳에서 때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내용 중에는 미리 들은 내용 이외에도, 수업 중 여러 학생들 앞에서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부터, 제가 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안기길래 거리를 두려고 주의를 준 것조차, 제가 그 학생이 싫다는데 껴안았고, 학생이 싫다고 하자 제가 혼낸 것으로 사실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계속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셔서 5시간 동안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쳐서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4) 교육부(2022).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pp. 131-134.의 내용을 보완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⁵⁾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통해 시정하고, 합당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음. 그런데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도 방식들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정서학대 혐의를 적용하여 교사가 형사처벌에 해임징계까지 당하는 일이 갈수록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그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교사들까지도 소송 언급만으로도 크게 위축되기 쉬움.
- 금전적 목적이나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소송, 협박, 민원을 남발하는 것은 교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학교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많은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됨.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2022)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인정 건수는 총 37,605건 중 1,089건(2.9%), 유치원교직원 140건(0.4%). 부모 31,486건(83.7%). 친인척 1,517건(4.0%).
- 보호처분을 받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등록되거나 벌금형과 경징계, 심지어는 징역형에 해임판결을 받기도 함.

□ 교사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

✓ 학교(장)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교사 개인으로서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음.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교사에게 안전사고 등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경과실이면 교사 개인이 배상하지 않고 국가에서 배상함.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판결에 나온 대로 처리하면 됨. 오히려 법치 행정이 확립되어가는 과도기로 이해하고 행정 절차나 판단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개선하면 됨.

✓ 교사 개인에 대한 소송

-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선임료의 일정 부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 형사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도,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도 교사는 크게 위축되기 쉬움.
- 자칭 삼촌이나 이모가 나타나 겁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외의 관계자와 대응할 필요는 없음. 다만, 관련 사안

에 대하여 대리권이 위임되었다면, 위임장과 학부모 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함.

✓ **합의금 요구**

- 대개는 조금만 알아봤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될 일인 경우가 많음. 오히려 학부모 측에서 폭언, 협박, 강요, 난동 등을 동반한다면, 교사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로 대응할 수도 있음.
- 교사의 잘못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자나 부장 선생님 등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정중히 사과드리고 학생을 잘 돌봐줄 것을 약속하며 해결할 수도 있음.
- 처음에는 낮은 금액을 요구해와서 들어주었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음. 돈을 잘못 주거나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유죄의 증거가 되어 더 큰 소송의 빌미가 되거나 추가금을 요구 받게 될 수도 있음.
- 초기에는 무조건 합의금을 크게 부르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감정이 가라앉고 주위의 중재 도움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거나, 진심어린 사과나 학생 지도 다짐, 담임 교체 요구 수락, 휴직, 전보 등을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음.
- 합의금과 함께 서로 이 일과 관련하여 추가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종결함.

✓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섭섭함이나 감정 해소**

- 학부모 자신의 학창시절 기억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있다가, 학생이 전하는 말만 듣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음.
- 평소 부모와 작은 소통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음. 학생의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소통할 때 항상 학생에 대한 칭찬을 덧붙이면 좋음.
- 학생을 징계 한다면 취지를 미리 납득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음.
- 오해하여 흥분했을 때는 흥분이 가라앉도록 시간을 벌다가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 오해를 풀어주면 대개는 진정되기 쉬움.
- 부장교사나 관리자, 해당 학생의 이전 담임 등의 중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학부모측 변호사 선임과 소송이 진행된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수개월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 진행 시 상담 치료 등을 병행하길 권장함.

✓ 교사를 공격하여 자녀의 징계를 줄이거나 면하기

- 온갖 이유로 학교를 공격하며 시간을 끌고, 징계가 흐지부지되게 하면서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기도 함.
- 공격 당하는 교사 중에는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던 교사가 많음.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작은 실수도 없이 지도하긴 어려움.
- 예전 방식이 몸에 배어 학생에게 손을 댄다든지, 신경 써서 많은 말을 해주거나 훈계하다 보면 기분 나쁘게 해석될 말이나 비속어, 아동학대로 해석될 만한 언행이 섞일 수 있음.
- 최근 판례에 비추어 아동학대로 해석될 만한 언행을 했다면 조기에 사과하고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학생 지도를 위해 합의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방법일 수 있음.

✓ 학생 일로 소송당하지 않으려면?

- 학생 몸에는 접촉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비행 사실이 있을 때는 교칙과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생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선도해야만 함.
-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의 상당수가 이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생김.
- 선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교원단체에 사례를 축적하여 법규 개정을 요구해야 함.
-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소송당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소송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쉬움.
- 빌미가 생기면, 이전에 다른 교사들이 했던 잘못까지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음.

✓ 소송 가능성이 있을 때 대응

-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가 있는 SNS 공간 등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상대를 자극할 수 있으니 보안에 유의해야 함. 주위에 도움을 청하며 알아보는 것은 좋으나, 말이 잘못 새어나가 불리해

질 수도 있음.

- 초기부터 학교 관리자나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단체나 교육청 교권 부서,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교사 개인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도, 관련 기관에는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쌓여 있음.
- 피해 교사에 대한 특별휴가(5일 이내)부터 공무상 병가(학교장 허가로 6일 이내, 추가 인정 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재해 심의 필요), 일반 병가, 연가를 이어서 쓸 수도 있고, 상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학교장은 교내에서 법규행정의 최고 전문가이며 책임자임. 만약 교장이 교사가 당한 침해를 은폐·축소한다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수 있음.
- 도움을 청할 때는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따른 일지 형식으로 요지를 정리하고, 목격자나 증거 목록도 확보해야 함.
-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목격자와 일어난 일 등을 누가 기록해야 함. 정리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음.

✓ 녹음 등 증거 수집과 정리

- 녹음과 녹화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 평소에 본인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도 있으니 뭔가 중요한 순간에는 녹음해서 본인만이라도 들어보길 권함.
- 학부모가 녹음기를 가방에 숨기거나, 학생이 교사의 말을 녹음하여 단어 몇 가지만으로도 징계를 요구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어 비난받거나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현실임.
- 녹음, 녹화는 음성권, 초상권 침해가 되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음. 잘못 배포되면 명예훼손까지 인정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거나 불법정보수집 그 자체를 처벌하기도 함.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검토를 미리 받아야 함.
-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자리를 이탈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 통신비밀보호법⁶⁾ 상 도청, 감청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녹음 과정에 위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증거로 제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제시해야 함.

- 녹음자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만 증거채택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음. 본인이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제시해야 함.
- 확보 과정에서 상대방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녹화나 녹음 중인 휴대폰을 상대방이 빼앗아 망가뜨릴 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확실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음.

✓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함.

-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긴급출동을 일단 해야 하지만 정식 사건 접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보호자에게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이 되면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음.
- 학부모 등이 교육청, 인권위, 국민청원 등을 이용한다면 일단 기분은 나쁘겠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가 나왔을 때 적절히 소명하고 시정하면 됨.
- 너무 억지스럽거나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첫 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조사과 조서 작성은 중요하니 변호사를 알아보길 권함.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나 진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에 확인 서명하기 이전에 내용 수정을 요청하거나,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변호사 알아보기

- 고소장은 대개 상대방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요구이며,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임.
- 과장 광고에 속는 것과 비슷하게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 100% 승소를 자신하거나, 겁을 주며 당장 계약을 재촉한다면 의심해봐야 함.
- 일단 계약하면 취소하고 착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며, 계약 전에는 다 해결해줄 것 같더니 계약 후에는 기대만큼 신경 써주지 않을 수도 있음.

6)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인터넷, 유튜브에는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검색해보면 도움이 됨.
- 시·도교육청과 지원청, 교원단체에는 변호사가 상주하기도 하고 변호사비 지원 제도도 확대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자문변호사 인력풀도 있어서 연락처를 요청하면 비교적 관리되고 검증된 변호사를 연결해 줌.
- 변호사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전문분야 등 자기소개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함. 출신교 동문회에 연락하여 동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음. 학교 관련 사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면 좋음.
-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 명 이상(교육청, 교사노조, 개인적으로 알아본 변호사 등)과 상담 후 계약하길 권함. 선임료나 견해가 비슷하더라도, 뭔가 더 편안하고 신뢰 가며 쉽게 설명해주고 소통이 잘 된다고 느껴지는 변호사가 있을 것임.
- 상담 시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상황도 숨기지 말아야 함.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불리한 사실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음.
- 심한 체벌이나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며 굳이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수도 있음.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만을 한정하여 비교적 소액으로 선임계약을 할 수도 있음.(일부 교육청에서는 재판 전 수사 종결 시 100만원까지 법률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함)
- 소송이 한번 진행되면 한 단계가 지날 때마다 1~2달이 소요되어, 1심이 확정될 때까지도 1년가량 소요될 수 있음. 이 기간에 불안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음.

✓ 변호사 선임료는?

- 1심에서 대개 550만원(부가가치세 10%포함)부터 선임료가 들 것인데, 사건의 복잡성 등 소송 난이도나 전관 여부, 법인에 따라 몇 배가 들 수도 있음.
- 법무법인에서는 대표변호사와 상담 후 계약했는데 막상 저경력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할 수도 있음. 작은 법률사무소라도 내 사건에 집중하고 성심껏 맡아줄 수 있으니, 무조건 비싼 착수금이나 대형 로펌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음.

-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선임료 일부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민사에서는 승소 시 변호사에게 5~10% 정도의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미리 확인해야 함.
- 비용이 발생하지만, 신경과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일부 지역 교육청이나 특정 교원단체에서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선임료를 할인해 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지원 기준이 있으니 계약 전에 상세히 알아봐야 함.
- 계약 전 사무장(학교에 나타나는 자칭 삼촌 이모들이 이분들인 경우가 많음)만 만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하고 변호사 개인 연락처를 받아 위급할 때도 즉시 연락 가능한 것이 좋음.

✓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주의사항

-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진 않음. 복잡하고 장기간 일어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도 고된 작업일 수 있음. 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도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알아보며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
- 언론이나 외부에서 소통을 요청할 때에는 담당 부장교사나 교감선생님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함. 여러 명이 응대할 경우 정보가 왜곡되어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재판 과정은 최소 몇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는 급하게 응대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변호사에게 문의하며 신중히 대응해야 함.
- 잘못 대응하면 또 다른 빌미를 주게 되며, 본인이 일일이 응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함. 송사로 장기간 고통을 겪어보면, 선임료가 그리 큰 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음.
-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관리자 등에 의해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우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한 후, 필요하다면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음.
- 고소할 때는 상대에게 맞고소의 빌미를 줄 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야 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양한 반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개 고소는 매우 신중해야 함.

교권 전문 교사가 알려주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황봄이(용인심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아동학대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에도 그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아 목숨을 잃는 아이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필요했습니다.

아동학대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2014.5.9.) 일부 발췌

-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와 판례들을 보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아동학대법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곳은 가정이 아닌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부모’가 아닌 ‘지도하는 교사’가 그 법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경기교사노조에서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서 조사를 받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안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교사의 몸을 밀치고 지나가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훈계하였다고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사례, 교사가 간식을 뜯어주지 않았다는 아이의 말에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사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서학대 주장들이 경찰서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지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지도 범위 내에 일어나는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 내 아동학대 이슈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0. 아동학대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아동학대 행위의 구별과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행위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는데 특히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 **정서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0. 정서학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행위 유형 중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 표면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기준도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될 것인지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보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행위 전후의 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나 구체적인 형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반복성 및 기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5769)

광범위하고 다양한 고려 기준이 사례별로 적용되기에 기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서학대의 범위를 추측하는데요,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도강사 A씨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제자 B군(당시 12세)이 불성실한 태도를 지속해서 보이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B군이 공부방에 간다고 했다가 안간다고 말을 바꾸자 전화로 “조현병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매우 좋지 않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온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이유로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양(12세, 캐나다 이중국적)에게 “절반은 한국인인데 김치를 먹지 못하니”라는 등의 다문화 학생 비하 발언을 해 학부모로부터 고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 ◆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피해자 B(초1학년)가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를 옆 교실에 8분한 홀로 격리시켰다. 해당 교실은 일명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지옥탕이란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이기 는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옥탕을 다녀온 아동 중 한명은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또 만6세이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칙 상 훈계·훈육의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는 정당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2018년 3~4월 교실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제자 B양(당시 13세)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도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업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종합해 보면, 학생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의도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상식적인 범위 내의 지도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학생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다음과 같은 언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 오랜 시간 벌을 세우는 행위
- 방치하는 행위
- 교실에 가두어두는 행위
- 비하 발언 또는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
- 공포감을 주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 등

0.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보호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서 조사(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사)-검찰수사-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자세한 흐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고가 명확할 경우 경찰서 조사 1회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법적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선생님의 쏠아야 할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흐름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2022.12.1.)

1 사건 발생

-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지 가능
- 수사기관 출석 동행 등 부분적으로만 선임하는 것도 가능
- 1심당 비용은 대략 400부터 시작 (경찰 수사참여 등 일부분만 선임도 가능/수사법원 단계로 나누어서도 선임 가능)

2 신고 의무자가 신고 / 보호자(피해자 측)의 고소

- 시·군 구청의 아동복지관련과에서 조사 (결과를 경찰에서 참조하기도 함)
- 보호자의 처벌 의사로 수사 개시

3 교육청

-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가능

← 수사개시
통보

경찰 (통상 1~2개월 이내 소요)

- 피해자 / 피의자 / 참고인 조사 (고소 후 대부분 한달 이내)
- 경찰에서 아동사건에 대한 혐의 유무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검찰로 송치

4 교육청

- 사안조사 (감사관)

검찰 (통상 2개월 정도 소요(사안에 따라 다름))

- 수사관 / 검찰청에서 연락
- 수사 후
 - ① 죄가 안 됨, 혐의가 없음 → 종결
 - ② 혐의는 있으나 유예 → 기소 유예
 - ③ 혐의가 있어 재판 필요 → 기소
 - ④ 혐의가 있지만 보호처분 → 아동보호사건 송치
- 기소 시
 - ① 구약식 → 형사법원, 벌금형, 전과기록
 - ② 형사재판 → 형사법원, 전과기록

5 교육청

- 징계 처분 (공무원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 ① 경징계 (견책·감봉)
 - ② 중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

법원

- 공판(=형사재판) : 통상 월1회 정도 진행, 통상 1회 - 4회 정도 공판 진행
- 검찰의 '구형' → 법원의 '선고'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죄 ② 선고유예 ③ 유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금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100~2000만원+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선고 가능 - 최대10년, 취업제한명령 선고시 교직 유지 어려워질 수도 있음 - 취업제한명령 없을시 직 유지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징계위에서 파면/해임 가능 ▶징역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or 집행유예 - 징역형 선고 시 교직 유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아동보호심판 (가정법원, 전과기록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 수강명령 / 관련 교육 이수

*** 여기까지가 1심 끝 ***

6 교육부

소청 (30일 이내)

- 검찰이나 피고인이 7일 이내 불복 시

7 법원

행정소송 (90일 이내)

- ① 항소(2심)
- ② 상고(3심)

0. 학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상담은 선생님의 성공적인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경우 노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생님의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조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관리자 보고입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과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을 경우라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리자에게 아주 상세하게 사안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관리자에게 학부모와 선생님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고, 무고의 경우 선생님의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러하더라도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중재와 지원 요구를 하시어 관리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사안을 수시로 누가기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스 누가 기록, 상담내용 기록 및 녹취 등은 선생님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자세히 그 날의 상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록하는 방법은 감정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의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는 것입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해 두시되, 목격자가 학생이라면 관리자 또는 전문상담교사와 의논하여 신중한 방법으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0.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이에 교사노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는 교사노조가 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선생님이 교육활동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변호사 자문, 경찰서 동행 서비스, 경호 서비스 및 교권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연락하여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천교사노조야말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0.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 정도 하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의 경력, 이력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보통 4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이나 800만원까지도 합니다(부가세 별도).

소송비 지원 제도는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아동학대 피소 방어 비용을 지원해주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역시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형사와 민사 소송 시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보상 범위는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조에서도 법률 비용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교사노조의 경우 소송비 1회 200만원 이내, 3회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법적 소송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교원배상책임보험은 유죄 시 미보장 등). 자세한 지원 조건은 교육청 보험 약관이나 노조 규정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경찰서에서 전화가 출석 통보가 왔어요.

아동학대 신고 되면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문으로 학교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신고에 따라 선생님의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 자체에 너무 위축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거나 애매한 상황일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변호사 선임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 선생님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선생님께 필요한 진술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도 임해야 하나요?

우리는 보통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교로 조사를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조사 기관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담공무원은 경찰서의 협조 의뢰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유무를 판단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경찰서에 아동학대 의견을 제출하므로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0.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애석하게도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경우 수사개시 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직위해제 처리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위해제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간혹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시 직위해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분리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선생님 보호를 위해서 잠시 분리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0. 저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상담내용 등을 녹취를 남기고 싶은데 불법은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녹취를 하는 선생님이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취물을 사용하는 데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녹취물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된다라고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곳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가장 안전하게 녹취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설치되는 전화기의 안내 멘트에 녹음이 되는 것을 공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학부모가 학생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서 학교생활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학생에게서 녹음기가 발견되었을 경우, 음성권과 통신비밀보호법,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부모에게 녹음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 외 학생과 교사의 대화, 학생 간의 대화가 제3자에 의해 녹음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몰래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들려 보낸 녹음기의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제한된 표현력, 부모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련도, 녹음 외 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어려운 불가피성, 수업의 공개성 등을 근거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업과 생활지도 시 언제든지 녹취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과를 꼭 해야 할까요?

학생 지도과정에서 혹은 학부모와 상담 과정에서 선생님의 명백한 실수나 과실이 있었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좋은 해결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만을 품는 지점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고소 과정에 휘말리면서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사과를 할 수 없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예로, 학생이 친구를 괴롭히다 선생님께 주의를 받았는데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부모와 전화 상담에서 사안을 공유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를 해야 친구들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참견한다고 정서적 학대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불필요한 사

과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교사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사과할 것을 강요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와 상담이었다면 그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와 상담에 대해 학부모를 이해시키려 적극 노력하신 과정이 추후에 있을 법적 절차에서 선생님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과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과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는 선생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생님 또한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0. 관리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학교에서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는 '신고 의무제도'가 있습니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1항).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관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기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학교에 민원을 넣었는데, 학교장이 선생님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는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을 곧 아동학대 의심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선생님 또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가 실제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우선 면밀하게 살피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무고로 피해를 받는 선생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학부모가 신고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강도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셨을 때 빠르게 관리자에게 보고하

고 사안을 공유함으로써 선생님의 입장을 알리고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며

아동학대는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시 가혹한 체벌과 욕설은 교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회인 교실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고요. 그런데 생활지도와 훈육이 빠질 수 없는 교실 상황에서의 교육적 지도를 정서적 학대로 몰아가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생님들은 점점 무력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업만 하고 생활지도를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주지 않고 정서적 학대의 위험에 빠뜨리며,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도록 하는 현 시스템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에서 학생생활지도법 통과에 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안전하게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사노조가 교육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육활동 보호 10문 10답

이나연 (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교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육활동 보호 10문 10답**

이나연(교사노조연맹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Q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해 정해진 법률이 있나요?



QnA 답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약칭인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은 일반법(민법, 형법 등)보다 적용 순위가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내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지

각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궁금할 때 교원지위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각종 복무, 수당 등 교직 생활 전반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찾아 확인해 보실 때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참조
각종 복무, 수당 등 교직 생활 전반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검색하세요!

Q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QnA 답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 호7)와 교육부장관 고시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8)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교육활동 중에 직면한 의견충돌이나 불쾌함, 갈등을 넘어서서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분쟁조정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참 조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 핸드북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7) 교원지위법 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찰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8)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Q3) 교육활동 중 또는 상담 중 상대방의 폭언이나 욕설이 우려되어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되나요? 불법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QnA 답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불법녹음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욕설이나 폭언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녹음한 후 비방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등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외의 용도로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Q4)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황을 막상 직면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기억하고 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QnA 답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실 때 가급적 빨리 ‘6하 원칙’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작성해 둔 기록을 토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안신고는 물론 추후 진술, 혹은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사안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적인 진술에 도움을 주고 피해사

실 진술의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기억하거나 기록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양 당사자측의 진술이 극명히 달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다면 이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역시 사안 발생 이후 신속하게 확보될 필요성이 크기에 이를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Q5)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nA 답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개최의사를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이 때 의사를 구두로도 전달할 수 있지만 사안의 발생 경위 및 개최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서면(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6)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휴가는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에만 쓸 수 있나요?



QnA 답변

교원지위법 제14조의3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⁹⁾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휴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Q7) 아동학대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QnA 답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아동¹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¹¹⁾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 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¹²⁾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의식주를 책임지지 아니하거나 청결, 건강, 의료, 교육적 방임(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의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의무교육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0)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12) 청주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1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Q8)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발야구나 공놀이 등을 하다가 학생들끼리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딪친 학생 중 한명이 다치는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친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를 통해 상대방 학생 측에 과도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QnA 답변

학생들이 함께 하는 놀이나 활동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이나 책임여부, 이에 따른 치료비 부담 여부는 각 학생의 보호자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친 학생의 보호자가 상대방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정한 방식 또는 과도한 정도의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호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교사가 해당 사안의 발생과 무관한 경우임에도 각 보호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교사에게 감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보호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할 수는 있으나, 격양된 감정을 교사에게 모두 표출하는 것은 지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관련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원칙적으로는 양측 보호자간의 의견 교환 및 의사 합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알려 교사가 중간에서 어느 한 쪽에게 치우쳤거나 교사가 사안을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 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교사는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중재의 책임과 권한이 없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자가 교사에게 욕설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욕설이나 위협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9) 학생들간 격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신체접촉(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이나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지도행위 조차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nA 답변

교사가 학생들의 격한 싸움을 말리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나 학생을 지도하고자 주의를 주는 정도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13)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모든 경우에 폭행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및 동기, 그 방법이 학생의 연령이나 성별,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팔을 잡아 제지하거나, 학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 모욕감 등을 주는 방식과 정도가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지도라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Q10)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교원과 다른 학교 소속인 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QnA 답변

학생에 대한 선도권(징계권)은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교원과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장에게 알려 선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학교교권 보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통해 학교규칙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상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의 경우 피해교원 소속 학교에서 피해교원보호 조치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 보호조치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소소한 TIP

공립유치원 초임 교사를 위한 학기 초 유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Tip - 이승미(인천고잔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소소한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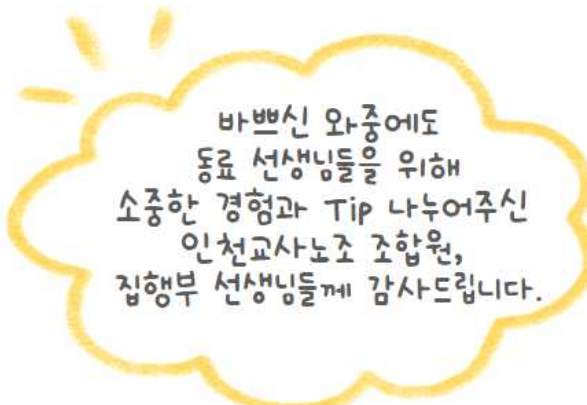
- 이지은(동수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된다는 것 - 황수진(이음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학부모 상담 - 이성곤(연수중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소소한 Tip

- 박지영(송의초등학교)



바쁘신 와중에도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과 Tip 나누어주신
인천교사노조 조합원,
집행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공립 유치원 초임 교사를 위한 학기 초 유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TIP!

이승미(인천고잔유치원 교사)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들은 만3~5세이다. 즉, 유아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만3~5세가 된 생애 초기 단계의 말하기, 걷기의 과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즉 유치원은 생애 초기 단계를 막 벗어난 유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용한 지식과 기량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가정 밖에 첫 번째 교육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들의 생애 첫 교사가 되는 동시에 생애 첫 교직에 임하는 초임 교사들은 유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초임 교사와 유아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싶어 하는 후배 교사들에게 유치원 교사 경력 15년 차 선배 교사로서 몇 가지 소소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1. 놀이중심 교육과정

최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단순히 유아들이 마음대로 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단순히 놀리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뜻이며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개정된 누리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운영의 형식’이 달라졌고 ‘계획의 틀’이 사라진 것이며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 누리과정에서도 놀이중심 교육을 실천해 왔다. 새로운 교육방식이 절대로 아니다. 계획 없이 유아들을 마음대로 놀리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방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교육철학, 놀이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유아들을 지도한다면 어느 순간 아무런 신념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방임하며 놀리는 교사가 되어있을지 모른다.

2. 일과 운영

일과 운영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일과 운영은 유아들이 다음 활동을 예측, 준비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선생님 중에 매일같이 수업 준비를 아침에 허둥지둥하는 선생님이 있었다. 항상 수업 시간 10분 전에 급하게 프린트 몇 장을 해서 교실로 들어가고 수업시간 내내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반 아이들은 안정감이 없고 산만한 분위기가 있었으며, 유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다. 일과 운영은 유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일과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야 하며 일과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교사 스스로도 안정감 있게 유아들과 생활할 수 있다.

3. 기본생활습관 지도

유치원의 3월의 교실은 전쟁터와 같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만3~5세 아이들 20명 정도가 모여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정글과 다름없다. 정글과 같은 교실을 개선하는 일은 오직 기본 생활습관 지도뿐이다. 3월 한 달 동안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1년을 좌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생활습관 지도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다. 인사하기, 정리정돈 하기, 줄서기, 차례 지키기, 자기물건 잘 챙기기, 스스로 옷입고 벗기, 신발 스스로 벗고 신발장에 정리하기,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 등등 매우 많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어야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놀이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3월 한 달 동안은 기본생활습관 지도에만 온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교실환경 구성

교사들 중에서는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교실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은 교실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환경을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면 축복받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사실 교실 환경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가이다. 교실 곳곳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다. 교구장과 책상 모서리, 미끄러운 바닥, 교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공간 등등 이러

한 곳들을 교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따라서 교실을 항상 둘러보고 뽀족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돌출된 부분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구를 항상 살펴서 망가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제에 따라 교구를 바꿔주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도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아무 소용 없다. 이것은 유치원 교육에서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5. 유아와의 관계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고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친절한 억양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아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때다.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뿐 정확하게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규칙을 지키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어른들께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하는 것 등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 주고 잘못된 행동은 올바른 행동으로 지도해야 한다. 요즘 유아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연의 역할을 포기해서도 안된다. 체벌이나 훈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유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

6.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유아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아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도하면서 유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작은 것이라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부모들과 대화할 때는 친절하나 품위 있으며 예의 있는 태도를 갖추기를 바란다. 지나치게 저자세로 찢찢매는 태도나 너무 격의 없이 지내는 관계는 오히려 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기 중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 중에서 반영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교사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런저런 요구를 다 수용하다 보면 결국 유아를 위한 교육이 아닌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활동은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신뢰를 쌓아가

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7. 학부모 상담

학부모와의 신뢰를 쌓는 첫 번째 난관 중 하나는 1학기 학부모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소소한 팁을 안내하고자 한다.

<상담 준비>

-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상담을 준비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 교육철학 등 전문적인 지식의 배경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아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특히 1학기 상담은 유아를 약 한 달 정도 관찰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어도 유아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 시에는 유아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와 놀이하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말하고 듣는 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며, 유아들 각자의 특성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학부모 상담 전에는 상담 설문지를 2~3주 전 배부하여 학부모들이 어떤 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상담내용 사전 준비

학부모 상담 전에 항상 대략의 상담내용을 작성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거나 작성해 놓는 것 이외에 학부모에 따라 질문이나 해야 할 이야기에 관하여 상담 설문지를 미리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상담 설문지를 간단하게 작성해 놓는다면 상담이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꼭 해야 할 이야기를 빠트리지 않을 수 있다.

- 상담 시간표 작성

상담 시간표를 작성할 때는 이름 순서대로 편성하기보다는 상담할 내용이 많은 유아와 상담할 내용이 비교적 적을 것 같은 유아의 비율을 적절하게 하여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여 가능한 시간대로 시간표를 작성하고 해당 시간이 어려워져 변경을 희망할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날은 상담 시간표를 여유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를 위해서 비대면 상담형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담 대기 장소

상담이 길어지거나 미리 도착한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 대기 장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상담 대기 장소에는 유치원 홍보자료나 학부모들을 위한 읽을 거리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상담 과정>

상담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로 하고 여유가 있다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5분 정도씩 두는 것을 추천한다. 쉬는 시간이 없다면 교사가 상담을 하는 동안 너무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상담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다음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임교사들은 상담의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가장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상담을 시작할 때는 1학기 상담의 경우 “○○이는 유치원 생활에 대해 가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가 가장 무난한 시작이다. 2학기 상담의 경우에는 “○○이가 1학기에 비해 많이 성장하였어요.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어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상담 시간이 짧으므로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상담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이 끝나기 5분 전에 “마지막으로 ○○이가 유치원 생활하면서 꼭 부탁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또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한다면 학부모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학부모 상담은 유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치원 운영이나 학급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 시간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학부모 상담 중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 및 요구 Q&A

Q. 상담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나요?

A. 유아가 있는 자리에서는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 긴장하고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다면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누는 유아에 대해 좋은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도 유아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유아를 불안하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유아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Q. 유치원에서 한글을 가르치나요?

A.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와 같은 기능적인 글쓰기나 기계적, 반복적으로 쓰기 연습은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한글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하나의 수준으로 획일적인 교육도 할 수 없고 많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식의 한글 교육은 한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을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놀이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생일카드 써주기, 독서기록활동, 독서연계활동, 동시 등 다양한 한글과 관련된 활동을 놀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습관과 문해환경이 중요한데요. 유치원은 매일 언어, 글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활주제 별로 다양한 문해 환경을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아이가 맨날 혼자 놀았다고 하네요.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A. (일단 이러한 질문에 교사는 해당 유아가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지, 사회성이 부족하여 혼자 노는 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성이 부족하여서 혼자 노는 경우가 많은 유아들은 교사가 개입하여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통 학기 초의 경우에는 유아들이 친밀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활발하게 놀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혼자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유치원 활동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좋아하지만, 혼자 놀기도 좋아합니다. 사회성이 없어서 혼자 놀이하는 친구들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지만 ○○이는 혼자 놀이를 하는 동안 즐거워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함께 놀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관한 소소한 Tip

이지은(동수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다음 학년도 희망하는 학년을 묻는다면 아마 1학년과 6학년이 제일 적게 나올 것이다. 1학년 담임은 갓 학교에 입학한 천동벌거숭이들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해 가르쳐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 6학년 담임은 이미 초등학교 생활에 너무 익숙하여 학교와 학급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해이해진 말년병장 같은 아이들을 다독여 중학교에 무사히 올려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학년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히 1학년과 6학년 지도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처음 1학년을 맡게 되어 눈 앞이 캄캄한 선생님들께 아주 미약한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

2.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앞으로 1년 동안 담임을 맡을 1학년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미리 안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1학년들의 행동들을 조금이나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체적 특성

- 성장에 비해 체중이 적으며, 내장 기관의 발달과 뇌의 성장이 현저히 빨라진다.

- 이 시기에 유치를 갈기 시작하며, 운동 기능의 발달로 장난이 심해진다.
-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전염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허약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피로를 쉽게 느끼므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 근력이 강화되어 움직임의 크기와 세기가 커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전보다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주의가 산만해 보일 수 있다.

2) 정서적 특성

- 정서적으로 집중의 지속 기간이 짧고 관심이 자주 변하므로 동일한 작업에 오랫동안 열중하지 못한다.
- 새로운 환경 변화로 불안을 느끼고 어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 감정 위주로 행동하며 집단의식이 거의 없다.
- 교사나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려는 아동도 있으나, 거리감을 두고 쉽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아동도 있다.

3) 사회적 특성

- 놀이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며, 혼자만의 놀이에서 벗어나 점차 협동적, 조직적인 놀이를 즐기게 된다.
- 자신의 감정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 경쟁심이 강하여 잘 싸우나 곧 풀어진다.
- 남녀 구분 없이 잘 어울리며, 구체적인 물건을 갖고 놀기를 좋아한다.
- 2~3명의 소규모 친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비밀을 지켜주거나 가벼운 거짓말로 친구를 감싸준다.

4) 지적 특성

- 호기심이 많아 질문이 왕성해지지만 전체를 의식하지 못한다.
- 생활 활동 공간이 좁고 시간관념도 막연하며, 현재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활한다.
- 상상력과 창조적 표현 능력이 발달하여 자기 나름대로 색다른 표현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모방을 많이 한다.
- 유아적 미분화 경향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 글자와 그 의미에 대하여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몇 개의 낱말을

합쳐 숙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나, 논리적 사고력은 미약한 상태이다.

- 보존의 개념이 결여되어 모양이나 형상만의 변화도 본질까지 변하였다고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호기심과 흥미가 많아 질문 횟수가 증가한다.

5) 도덕적 특성

- 자율적인 도덕성 형성의 시기에 이르지 못하고, 타율적 도덕성 형성 시기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
-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또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짓말이나 심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 시기의 어린이는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물리적인 결과나, 그 결과가 자신의 필요나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선인가 악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3. 하나부터 열까지 소소한 생활지도 Tip

1학년의 생활지도는 ‘아니, 이걸 모른다고?’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의 반복이다. 입학 후 3월에 배우는 입학적응활동에서는 학교 화장실 사용법까지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교사의 피, 땀, 눈물로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한 1학년들을 어엿한 초등학생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1학년 담임의 몫인 것이다. 이렇듯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지도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1학년 학생들에게 정착이 된다면 그 후에는 그 반에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없다는 전제 하에 큰 일 없이 착착 돌아간다. 개인적으로는 학급긍정훈육법을 바탕으로 학급경영을 하므로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일 년 내내 생활지도를 한다.

1학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고 기본생활 습관 위주로 생활지도를 한다. 모든 1학년들이라면 다 하는 복도통행지도, 급식지도, 화장실 사용지도, 사물함, 책상, 의자 사용 지도,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지도, 등하교 지도 등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르쳐야 할 것이 끝도 없이 많다. 하나하나 다 적자면 이 책이 끝나도 모자랄 것이므로 그 중 몇 가지만 소소한 Tip을 나누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복도와 계단 통행지도이다. 복도통행은 우측통행에 소리 내지 않고 사뿐사뿐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1학년들이 두 발 모두 땅에 닿으면 큰일 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입학 준비물로 가져온 개인 콩주머니를 머리에 올리고 콩주머니를 떨어뜨리지 않고 복도를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콩주머니가 없다면 미인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처럼 교과서를 머리에 올리고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계단은 학교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이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뛰어 내리기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다친 반 학생이 있다면 생생한 생활지도 자료가 되어 추후 계단통행 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 계단 역시 복도통행과 마찬가지로 한 칸씩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시간을 들여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대한 소소한 지도Tip이다. 처음 책상 서랍을 사용할 때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정리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는 모아서 책상 위에서 한번 탁탁 친 후 서랍 오른쪽에 차곡차곡 넣고 서랍 왼쪽에는 종합장, 색연필, 싸인펜 등을 넣는데 크기가 큰 것이 아래로 오도록 정리해 넣도록 한다. 정리가 끝나면 교사는 교실을 한 바퀴 돌면서 학생들 모두 서랍 정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 놓은 서랍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놀랍도록 엉망진창이 되어있다. 자리를 바꿀 때마다 책상 서랍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하거나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후 책상 서랍을 확인해서 정리가 잘 되어있는 몇 명의 아이의 책상 서랍에 작은 간식을 넣어둔다. 다음 날 등교해서 책상 서랍 속 간식을 확인 한 학생이 “선생님, 책상 속에 이게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머, 우리 ○○이가 책상 서랍 정리를 잘해놓아서 정리 요정이 다녀갔나 보다.”라고 대답해준다. 그럼 다른 아이들이 눈이 뚱그려져서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다. 이 때 “정리요정은 책상 서랍 정리를 잘 하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는 요정인데 이 요정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선생님도 없을 때 왔다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 오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평소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간식 요정한테 간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후로는 “정리 요정이 오늘 오려나?”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책상 서랍을 부리나게 정리하는 귀여운 1학년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등 시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지도방법이다. 아직 시간관념이 미숙하고 시계 보는 방법을 모르는 1학년들에게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 하루 일과를 칠판에 잘 보이도록 적어준다. ①국어 ②중간놀이

(10시 20분) ③수학 ④점심(11시 30분) ⑤봄 ⑥집 가기 (1시 40분) 그리고 일과를 시계 바늘과 함께 설명한다. “국어 공부를 먼저 하고 (교실 시계를 가리키며) 짧은 바늘이 10, 긴 바늘이 4에 가면 중간놀이를 할거예요. 긴 바늘이 9자에 가면 다시 교실에 와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짧은 바늘이 11에 가고 긴 바늘이 6에 가면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쉬다가 긴바늘이 3자에 가면 교실에 와서 봄 공부를 합니다. 짧은 바늘 1자, 긴 바늘 8자에 가면 오늘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갑니다.” 얼마 동안은 점심 언제 먹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긴 바늘 11자, 짧은 바늘 6자에 가야한다고 대답해 줘야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대답해 주지 않아도 시계를 흘끗 보고 “아직 긴 바늘이 6자에 안갔네.”라고 하며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기고 운동장에서 놀다가도 학교 외벽에 있는 시계를 보고 “애들아 긴 바늘 9자야. 우리 교실 가야 돼!”라고 알려주는 아이도 생긴다. 이렇게 시간관념을 익히면 2학기 수학에 나오는 시계 보기 단원에서도 수월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

4.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소소한 학부모 상담 Tip

1학년들은 학년 특성상 학생 상담보다는 학부모 상담의 비중이 높다. 학교를 처음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염려되어 집중 상담주간에도 다른 학년에 비해 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며 상시 상담도 잦은 편이다. 또한, 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의 시작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상담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가 상담을 원한 경우) “바쁘실 텐데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학부모들도 예의를 갖추어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후 학부모님들께 어떠한 점이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하셨는지 여쭙보면 학교 적응 정도, 수업 태도, 교우 관계, 학습 능력 등을 말씀하신다. 1학년이니 학교 적응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적응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염려되는 부분은 상담 말미에 전한다. 그리고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서는 교사가 지켜본 바를 최대한 객관적 사실로만 말하는 것이 좋다. 수업에 잘 집중하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통합교과와 수학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잘 듣는 편이나 국어시간에는 자세가 흐트러져서 바르게 앉으라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하나

실내화를 자꾸 벗어서 실내화를 바르게 신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등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이야기하면 학부모님들도 수긍하면서 가정에서도 지도하겠다는 답을 하기도 한다. 학생이 고쳤으면 하는 점이나 학교생활에서 염려되는 점은 교사가 먼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보다는 “어머님(아버님)께서는 우리 ○○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시길 바라세요?”라고 질문을 하고 학부모님이 대답을 하면 “그렇게 되려면 ○○이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한다. 이 때 학부모가 고쳐야 하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답한다면 “네, 저도 ○○이가 그 부분을 고친다면 ~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 한다.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아, 그렇군요. 그 점을 저도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교사가 생각한 고쳐야 할) 점도 더 신경 쓰면 우리 ○○이가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교사의 본심도 살짝 결들인다. 굳이 이렇게까지 둥글게 둘러 둘러 말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학생의 고칠 점을 말한다면 학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 자녀의 고칠 점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수가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는 선생님이 우리 애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남은 학기 동안 담임과의 사이가 틀어져 버려 사사건건 곱지 않은 눈으로 담임을 대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와 학부모 둘 다 감정 상하지 않고 원만하게 상담을 마무리 하려면 좀 답답하더라도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학생이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교사가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도 문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학생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야 학부모의 거부감이 덜 하다. 또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학생과 반 친구들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반 친구들이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야 학부모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오늘 ○○이가 국어 시간에 해야 할 학습활동을 하지 않아서 세 번 이야기를 하였더니 하기 싫다고 짜증을 내면서 발을 쿵쿵 거리고 책을 구겼습니다. 1학년이니 감정 조절에 미숙하여 그럴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이 계속 된다면 반 친구들의 학습 분위기를 헤칠 수 있고 반 친구들이 ○○이는 애기 같다고 생각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이때 학부모의 개선 의지가 강하다면 문제가 많은 학생의 경우 학교상담실인 위 클래스 연계나 종합심리검사 등을 조심스레 추천해도 좋다. “우리 애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 왜 그러는지 모

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학부모에게는 아이의 요구 사항을 다 맞춰 줄 수 있는 가정의 상황과 교사 한 명과 스무 명이 넘는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실 상황 속에서의 아이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학교생활의 시작인 1학년에 이러한 행동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녀가 어려움을 느끼고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위 클래스 연계에 동의한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전혀 안 통하는 학부모가 있기에 교사가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5. 마치며

이렇게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소소한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Tip을 나누어보았는데 정말 소소하여 도움이 되긴 될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한 분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다. 그리고 모든 1학년 선생님들께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된다는 것****- 초등 고학년 생활지도에 관한 이야기 -****황수진(이음초등학교 교사)**

갓 입학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미숙한 1학년과 비교하면 6학년은 참 많은 것이 다릅니다. 2학년, 3학년을 거쳐, 6학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당당해지고, 후배들을 보살필 줄도 알고, 학교의 최고 언니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선생님이 들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도 척척 들어서 옮겨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서로의 1대 1 교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학년과 다르게 대화가 통하고, 수준 높은 학습활동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6학년 담임이 된다는 것은 쓰나미와 같은 아이들의 감정 파도타기를 함께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되지 않지만 6학년 담임과 부장을 하면서 힘들지만 매력을 느꼈던 6학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활지도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감추고 있는 성향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지에 따라 한 해 살이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6학년-인디펜던스 데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체적인 자아가 생기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6학년은 사춘기의 초입으로 이러한 독립의 첫발을 막 내딛으려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보다 또래가 더 믿음직스럽고, 틀려도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

동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옷 입는 것, 먹는 것 등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어른들의 참견을 거부하고,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대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공부를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도벽,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6학년 아이들이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 지점으로 성인이 되고 싶은 욕망과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학년 담임은 학생들의 이중적 잣대를 이해하고,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첫째, 교사가 아이를 믿고 있다고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행태가 나쁜 쪽으로 변해 가는 스티그마 효과¹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해 낙인을 찍게 되면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스티그마 효과와 반대되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긍정적 기대를 받게 되면 긍정적 행태를 보이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불신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불신이 쌓이게 되면 허물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면 진심으로 교사를 위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무조건 학생을 믿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과 태도에서 불신을 드러내지 않고,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학기 초에 또래 사이에서 일진으로 오인될 만큼 과격한 행동을 하고 뭉쳐 다니는 학생들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힘이 좋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가장 크게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와 당부를 하면서 지도를 하였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집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을 과고들기보다, 어째서 그 언행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지적보다 논리적으로 문제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게 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

14)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니다. 교사의 지지적인 태도에 그 학생은 스스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둘째, 사소한 잘못은 넘기고 큰 잘못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야단쳐야 합니다.

6학년은 작고 사소한 잘못에 대해 지적할 경우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6학년일지라도 ‘너 주변이 왜 이리 더럽니?’, ‘교과서 펴라’, ‘줄 맞춰라’처럼 저학년에게 지도해야 할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일일이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6학년이니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할 거야" 하며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의 이러한 태도는 아이가 책임감을 느끼고 작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다른 학생에게 퍼붓거나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난 경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야단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단단히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의 가치관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저학년 시기에는 부모나 교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어야 했지만, 6학년에 접어들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학급의 규칙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세 또한 길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있어서 자치의 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급 자치 회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급 규칙 세우기부터 다양한 학급 문제 해결을 온전히 학급 자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이상적인 제안과 의견들이 오고 가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선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규칙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고, 동시에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방법은 회의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면 사용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학급 임원을 통해 회의를 이끌어도 좋지만 충분한 사회자 연습을 거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6학년-이유 없는 반항’

6학년은 자신의 의견이 확고하고 나름 논리적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나 깊이는 제각각입니다. 삶의 목표도 어렵듯이 생기고 스스로의 가치관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6학년은 반항적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하다면 선생님의 언행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잣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홀로서기를 시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지시에 불응하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거부합니다. 교사나 부모의 말에 이유 없는 반항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어른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엄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럴 때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억누르거나 혼내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일단 아이의 불편한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반항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지적한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학생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도,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학년은 어린이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혼자 살아가기 힘들며, 선생님과 또래에게 미움받기 싫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직은 도움이 필요하고, 논리적이고자 하나 논리력은 부족하며, 어른이고자 하나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반항과 의존이 공존하는 6학년 시기에는 상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듣기 대화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학년 시기에는 주로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이끄는 것과 학업에 대한 훈계를 해왔다면, 6학년이 되면 아이의 생각이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듣기 중심의 대화법을 통해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민을 알 수 있게 되면 그에 따라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통해 사회성을 익혀오던 저학년 중학년 시기가 지나 6학년이 되면 부모와 교사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만의 인생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 평소 꾸준히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두면 상담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급 전체가 있을 때, 칭찬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개인적인 상담 시간에 이런 칭찬을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큼니다. ‘선생님은 내가 체육 시간에 뒷정리를 도와주어서 고마웠어. 네가 책임감과 배려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미술 시간에 꼼꼼히 끝까지 그림을 그리는 점이 좋았어. 그건 네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 저학년처럼 단순한 칭찬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생과 교사 간에 수평적인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6학년은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기주장을 내세웁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수평적인 교류를 해야만 아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은 훌쩍 커버린 몸과 아직 덜 자란 정신 사이의 괴리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래에 집착하며, 어떤 아이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연예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에 교사는 언제나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학년-흐르는 강물처럼”

예비 중학생인 6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현실적 감각이 아직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가장 먼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공감 대화를 통해 풀어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접근법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라는 점이지요.

첫째, 아이가 관심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능력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6학년 시기에는 아직 자신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한 아이에게 적성검사 등을 통한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이며,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교사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진로는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평생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방향도 찾아야 합니다. 한 여학생이 자신은 ‘백수’가 장래 희망이라고 적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백수’로 지내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았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돈)는 어떻게 벌 것인지’를 물어보니 주식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여서 너의 장래희망은 ‘백수’가 아니라 ‘주식투자자’로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경영과 금융에 대한 정보를 찾아 진로를 설계하였습니다. 막연한 진로를 구체화하여 주는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셋째, 아이에게 자신감과 결정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고학년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과 성취동기가 발달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 시기를 지나면서 성취 기회를 얼마나 얻어 왔는가에 따라서 더욱 높은 성취를 얻기 위한 근면함을 얻는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이나 무리한 요구, 지나친 경쟁, 결과 중심의 학업성취 등으로 겪게 된다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얻습니다. 전자의 경우, 본인의 성취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강하게 발생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지시나 강요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여 서로를 상처입힙니다. 후자의 경우, 수업태도가 나빠지며 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특히, “별루요. 그냥요.”라는 대답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다. 달리 말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칭찬을 통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마치며

굳이 6학년 담임이 아니어도 후배 선생님들께 상담 연수를 다양하게 받아 보길 권합니다. 상담의 대화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학년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은 친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너의 편이라고 알려주고, 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선생님을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친구 같지만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학생들도 시끄럽고 무질서한 학급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선생님은 학생과 함께 만들어진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아이들과의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6학년은 학부모가 가장 적게 개입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이 곧 학부모와의 라포 형성도 됩니다. 개별적 특성을 가진 학년인 만큼 ‘자신’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학생은 교사에게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교권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눈길, 칭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선배교사님들께 ‘6학년을 해야 제자가 생긴다’라고 들었습니다. 졸업식에 함께 울기도 하고 스승의 날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힘들지만 매력 있는 6학년 담임을 하시는, 하시게 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학부모 상담

이성곤(연수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1차적으로 사안을 다루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존재가 담임교사이다. 관련 업무 담당교사, 생활부장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중 교사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학부모와의 소통이다. 좋은 일로 연락하여 좋은 말을 주고받는 상담이야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학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여 담임교사를 넘어서 학교 전체를 골치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와 소통해야 할까? 필자의 사례를 짚어보며 사안을 다룰 시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교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자.

신규 시절, 학급 내에서 수업 시간 중 다툼이 일어나 학급 남학생 두 명이 주먹질을 주고받은 사안이 발생하였다. 한 학생의 힘이 강해 상대방 학생이 일방적으로 맞아 크게 다쳤다. 마침 생활부장교사 수업 중에 일어난 사안이라 생활부장교사가 직접 다친 학생을 조치하고, 사안을 조사하여 나에게 알려주었다. 당연히 신체폭력이 들어갔으니 학교폭력에 해당되었는데, 사안을 보니 두 학생 모두 잘못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맞은 학생도 그 전에 때린 학생을 놀리며 자극하여 언어폭력을 저지름) 이 사안을 양측 부모님에게 전달했는데, 일방적으로 맞은 학생 측 학부모는 노발대발했다. 양측 학생이 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양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일방적으로 맞은 학생 측 학부모는 자기 자녀의 피해만을 주장하며, 신체적, 정신

적 피해를 당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일방적으로 때린 학생의 학부모의 경우 상대방 학생 측의 강경한 대응에 위축되어 있었다. 특히 상대방 학부모 측에서 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내가 들어도 놀랄만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그 학부모가 매달릴 사람이 나밖에 없어보였는지, 자꾸 합의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하였다.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던 신규 시절의 나는, 속으로 상대방이 너무나 큰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연락을 준 학부모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합의금 이야기를 상대방 학부모에게 꺼냈다. (물론 금액을 낮추라는 요구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언급하였다.) 상대방 학부모는 담임선생님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니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었다. 같은 반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담임교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데, 합의금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 자칫 한 쪽 편을 들게 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또한, 합의금 문제는 교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개입을 해서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잘못하면 담임교사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즉, 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 후 이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지금의 나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첫째, 상대방의 요구는 안타까움 측면에서 공감해주되, 법적 처벌 문제는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을 안내하겠다. 둘째, 학교 내에서 지내는데 문제 없게끔 담임교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정도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겠다.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법령 등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를 옮긴 후, 학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반 남녀 학생 간의 성사안을 다룬 적도 있다. 남학생이 가해 관련, 여학생이 피해 관련 학생이었다.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사안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사안 보고, 117 신고 등의 절차를 취하면서 양 측 학부모와 소통하였다. 이 때 교사는 양측의 감정을 모두 받아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일단 피해 관련 측은 학생이 겪었던 고통을 부모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모든 원망이 가해 관련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쏟아질 수 밖에 없다. 굉장히 격앙되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가해 관련 학생 측 학부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피해 관련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무조건 사과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가해 관련 측에서 피해 관련 측의 무리한 요구(학급교체나 강제전학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학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 관련 학생 측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 양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준수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들의 어려움이나 감정에 공감하되,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교 측의 조치를 전달해야 한다.(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냥 감정을 빼고 절차 관련된 안내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 관련 여학생 학부모의 요구는 같은 또래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 학생이 처벌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딸을 보호해야 하므로 학급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체없이분리(즉시분리) 조치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분리를 지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가해 관련 남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하니 학급교체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있는 일이 소문이 다 퍼져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분리 조치 유지 역시 학습권 침해 차원에서 너무나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사안의 경우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업무 담당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학교폭력사안 조치 중에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가 있다. 이를 통해 분리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절차에 따라 긴급조치를 진행하여 가해 관련 학생의 출석정지를 진행하였다. 문제는 학급교체였다. 학급교체는 학교 임의대로 할 수 없다. 현재 절차상 이 사안의 피해, 가해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조치를 취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6호 학급교체 조치가 나와야만 한다. 이 절차를 학부모에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치가 나오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당시 학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을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부분과 학급교체 요구는 이러한 절차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 관련 학부모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안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 교사는 학

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정독하여 학부모에게 바로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숙지가 필요하다. 물론 잘 모르면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여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안으로 예민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지 못하면 그 화살이 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학교폭력사안을 겪어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업무 담당교사가 머뭇거리며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그 비난은 교사가 감내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경우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좋다. 학부모가 절차에 대해 문의하면 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도록 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4.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 코칭 및 면담이 필수이다.

계속 위 성사안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피해관련 여학생 부모님 측에서 가해관련 남학생 측 부모님을 만나보기를 희망하였다. 의사를 남학생 측에 전달하니 남학생 측도 꼭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는 서로 화해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듣게 되면 이를 들어줘야 할지 정해야 한다. 화해 자리를 마련하여 사안을 조율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사안 악화의 책임을 학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사과하는 것은 학부모끼리 알아서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양 측 학부모가 만나는 일은 사안을 보다 쉽게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일단 양측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인지 최대한 파악해보고 화해 자리 주선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다.

당시 나는 걱정이 있었다. 남학생 측에서 학급교체 조치 요구는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을 한 입장에 선 사람이 사과하는 자리에서 중언부언하면 피해 측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느끼기 어렵게 된다. 이에 나는 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를 화해 주선 전날 따로 학교로 불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내교한 학부모의 경우 잔뜩 긴장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교사가 위로와 공감을 통해 분위기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가해 관련 학생도 심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학생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달하며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보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고통도 위로하며 공감해준다. 면담 중 나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주며

긴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나는 피해관련 측 학부모가 만나자고 한 점이 사안이 굉장히 좋게 풀려가고 있는 징조라며 위로를 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사안의 경우 양 측 학부모가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충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 다음 학부모에게 피해관련 측 학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도록 질문을 던지고 내 의견을 말하였다. 이 다음으로 내가 이번 면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성인도 진심 어린 사과 방식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변명을 하다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생긴다. 감정적인 대응, 반격 및 반론 제기, 말을 끊는 행위 등 어떠한 행위라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데, 이를 억누를 수 있는 멘트도 미리 마련할 것임을 안내하였다.(즉, 핵심은 이의제기, 감정분출을 자제하는 것)

이렇게 코칭을 한 후 학부모에게 만남이 잘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되었을 경우도 생각해볼 것을 말하였다. 만남이 잘 안되었을 경우 학교에서 취하는 절차와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후 헤어졌다.

다음 날 양 측 학부모가 만나게 되었다. 이 때에도 가해 관련 측 학부모에게는 약속시간 30분 정도는 일찍 와서 대기하도록 하는게 좋다. 미리 와서 기다리는 입장임을 상대방이 확실히 느끼게 하여 일을 잘 풀고 싶다는 의사를 은연 중에 밝히는 방법이다.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에게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돕고, 나중에 오는 학부모는 시원한 차나 물을 대접하여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해소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행히 이야기가 잘 되어 피해 관련 여학생 측 학부모가 가해 관련 남학생을 용서하였고, 담임교사 및 학년부에서 두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신경쓸 것을 약속하여 피해 관련 학생 학부모를 안심시켰다. 이 사안은 양 측 학생 모두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내가 겪은 학교폭력 사례를 짚어보며 사안 발생 시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보았다. 사안은 비슷한 유형이라도,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다양하게 일어나 사례의 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 글이 업무담당자나 담임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할 때 참고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담임이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 점은, 사안 처리 시 교사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안 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련 학생 모두가 피해, 가해 행위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원은 혹시나 모를 민원 노출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상담과정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거나,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 감정이 격해질 수 밖에 없다. 그 감정을 결국 담임교사나 학교폭력담당교사가 받아야 하므로 교원의 스트레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교사의 스트레스는 결국 전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호를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는 교사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접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보고 관련된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소소한 Tip

박지영(송의초등학교 특수교사)

Intro: 나는 특수교사다!!

성찰하고, 노력하는 교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사! 나는 특수교사다!!

고민 하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 흥미있는 수업,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 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부적응 행동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 셋: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고민 넷: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들, 특히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I. 고민 하나: 수업

1. 여러 가지 수업 방식

우리 아이들은 각자 다른 개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 능력이 좋은 아이,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 수업에 있어서 우선되는 사항은 아이들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부적응 행동을 보일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개별적인 수업 외에 다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수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급은 3학년 2명, 4학년 6명 총 8명의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 아동 2명은 아직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였습니다. 3학년 아동들이 시청각 자료에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글이 야호’라는 동영상을 보고, 그날 배운 글자를 한글 자석카드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무척 흥미 있어 하고 집중해서 참여합니다. 2학년 학생 2명도 한글을 해득하지 못해 옆 반과 협력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단어 보고 쓰기, 점선 위에 덧쓰기, 그림 색칠하기로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과와 연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스 단어를 배운 날은 코스모스 꽃으로 가을 들판 꾸미기, 가을 동요 부르기를 했고, 사과 단어를 배운 날은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 하기, 과일 바구니 꾸미기, 마트 놀이 역할극 등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미술, 음악과 연계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기술(마트 이용하기)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2. 수업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세티넷, 편맘, 일일수학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EBS자료인 한글이 야호, 수학이 야호, 핑크퐁 한글송, 뽀로로 숫자송, 아이스크림 홈런 구구단송도 유익하고 흥미 있는 자료입니다. 아이스크림 홈런 구구단송을 매일매일 불렀더니 어느 정도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한 가끔 TV원작동화 동영상을 보면서 질문에 답하기,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기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더니 글을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아이들도 동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I. 고민 둘: 행동지도

1. 부적응 행동 지도 사례: 선택적 함묵증

우리반에는 선택적 함묵증을 보이는 아동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께서는 청각장애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 뿐 아니라 친구들과 상호작용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연필도 꺼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특수학급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을 만나서 관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학생을 만나고 제가 계획한 것은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A와 같은 학년이 우리반에 3명 더 있었기에 또래들을 활용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들은 A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도0이가 A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쉬는 시간에 드디어 A는 블록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였습니다(이틀 동안은 친구들이 하는 걸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고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다). 미리 지도를 받은 도0이가 A에게 “너 **태권도 학원 다니지?”하고 물었더니 A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도0이가 다시 “너, 나 봤어?” 하고 물으니 “아니, 못 봤어”라고 두 번째 답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슬그머니 끼어들어 “와, A도 **태권도 다니는구나, 그런데 도0이를 못 봤어?” 하니 “네, 시간이 다른가봐요.” 이렇게 말문을 열게 된 A는 이후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엔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대답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것 읽고 쓰기 할 거예요. 먼저 과일 이야기부터 하자. 선생님도 포도 좋아해요. 현0는? 수박 좋아해요. 예0이는? 사과. 그럼 A는?” 이런 식으로 하니 대답을 곧잘 했습니다. 무표정으로 앉아 교사의 설명만 듣던 A는 색칠부터 시작하여 글자쓰기 등을 수행하였고, 그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동생은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 다녀왔다 등 활기있게 이야기를 이어 갔고 통합학급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발표하는 모습을 찍어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달라진 A의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도 교실과 가정에서 A를 격려하며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A의 무표정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단지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닫힌 게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또래들을 활용해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간 것이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아동을 충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대학 다닐 때 비웠던 ABC이론에 따라 왜, 언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중재를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습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학습기능 향상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또래를 활용합니다.

또래는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놀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사전에 미리 또래 교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행동계약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칭찬 스티커를 붙이거나 행동계약서를 써서 서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넷째, 다른 인적 자원과의 연계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담임 선생님, 가정과 연계하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Ⅲ. 고민 셋: 학부모와의 관계

1.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지도한다는 것을 학부모님이 알게 되면 교사를 신뢰하고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학기 초 학부모 면담 때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고, 학교와 가정의 연계에 대해 성실히 의견을 전달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려 노력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가정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학생 지도에 열성을 다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학부모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넘은 교직 생활 동안 학부모님들과 관계를 맺으며 느낀 점은 교사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사랑하고 지도하면 그 진정성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로 격리 중일 때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는 교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관리 잘 하라고 다정한 말 건네는 교사 중 어떤 교사를 학부모님이 신뢰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전문성 또한 학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이나 학습 수준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조언을 구할 때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게 설명 드리고, 체계적인 지도로 학생들의 학습이 향상을 보이면 더더욱 교사를 신뢰할 수밖에요. 그러려면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자기 연찬을 해야 되겠지요.

2.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담당한 5학년 남학생 엄마는 자녀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운동화가 작아져서 구겨 신고 다녔고, 4월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녔지요. 혼자서 형제를 키우느라 힘겨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녀를 방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기에 그냥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니와 통화를 하며 형제를 키우느라 하소연하는 걸 들어드리고, 복지사와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 사회복지 예산으로 의복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학교에서 했던 행동들과 학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한 후에 수정해야 할 행동도 말씀드렸지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어머니는 아이들 의복에 전보다 신경을 쓰셨으며 어디 가서 속상한 이야기를 할 곳도 없고,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학교로 오기 전엔 불만이 있을 때마다 교장실을 찾아가겠다고 하셨다는 어느 학부모도- 아이가 중증 장애였어요 - 아이가 학습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리고, 자주 의사소통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더니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요, 조력자가 되셨습니다.

IV. 고민 넷: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1. 통합학급 담임과의 관계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 중 하나가 통합학급 담임입니다. 특수학급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통합학급, 비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당당한 학급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데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별화 협의회 때, 또 수시로 아동의 행동에 대해 소통한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기 초에 담임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학급에서 어떤 것을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 통합학급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야기 드립니다. 학기말에는 그동안 학습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말씀드리지요. 가끔 특수교사 카페에 통합학급 담임과 특수교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건 네가 해야지, 이건 내 역할이 아니지’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물론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을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우리 아이의 성장과 행복’보다는 감정을 내세운 힘겨루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동학년 회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고 (저는 동학년 친목 담당할 적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교사는 왜 특수교사에게 학년 친목 시키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년 친목이 그렇게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니고 우리반 일에 피해주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수락하였고 즐겁게 친목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학년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학

년 선생님들 역시 특수반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해 전 일이지만 그때 동학년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는 지금도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일에 적극성을 보이면 다른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수교사 힐링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는 통합학급 담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놓지치 말고 잘 활용하면 통합학급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지요.

2. 그 밖의 인적자원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복지사와 상담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일 때 위클래스 상담사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또 복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급 아이도 복지사와 연계하여 미술치료,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한 아이를 교육할 때 학습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 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지도해야 합니다. 한 아동을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떤 속담처럼 학교의 모든 자원,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풍성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풍성한 교육이요!!



2022

**인천교사노동조합의
교육활동 보호**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I. 인천교사노조의 교육활동 보호 활동

1. 주요 활동 일지

날 짜	활 동 내 용
2020.03.21.	인천교사노조 창립 / 조합원 상담
2020.05.28.	단체교섭안(교권 관련 포함) 최초 제출
2021.02.14.	교권보호기금 운영
2021.03.08.	교사지원포털(T for U) 운영 - 수업나눔, 교권상담, 법률 안 내 등
2021.05.28.	변호사 동행 지원 시작 -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첫 조사 시 변호사 동행
2021.06.09.	인천시교육청 교원돈옴터 방문 및 면담
2021.07.09.	교권보호위원회 법안 개정 의견 수렴
2021.07.17.	교권보호위원회 법안 개정 반대 의견 제출 및 독려
2021.08.13.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사노조연맹에서 주도하였던 ‘원격 수업 중’ 교권 침해 포함
2021.12.10.	[성명서]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1.12.10.	구청 아동학대 담당자 조사 후 조합원 면담
2021.12.15.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공문 발송)
2021.12.23.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요구 교육청 면담 - 교원단체와 함께하는 교권TF팀 구성 요구 - 서울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요구
2022.01.07.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면담
2022.01.11.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 포럼 모니터링(교육부, 교원단체, 복지부)
2022.01.19.	인천교사노조-인천시교육청 8차 실무교섭(교권 보호 관련)
2022.01.20.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협의회 참석
2022.01.24.	교사노조연맹 교권 연수 참여
2022.01.24.	정서행동 위기학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 모니터링 (좋은교사운동 주최)
2022.02.10.	교사마음보듬기(심리상담 실비 지원 프로그램) 진행

날 짜	활 동 내 용
2022.02.13.	[보도자료]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고발 조치 환영,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촉구
2022.02.16.	인천교사노조-인천시교육청 9차 실무교섭(교권 보호 관련) - 교권 지원 강화, 교권 관련 협의체 연 2회 이상 운영 요구!
2022.02.17.	[홍보] 미니 교권 자료실 https://ictu.padlet.org/ictu242/mini
2022.02.18.	[홍보]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를 위한 연2회 이상의 정책협의회 합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결정!
2022.02.23.	인천교사노조-인천시교육청 10차 실무교섭(교권 보호 관련)
2022.04.08.	인천교사노조-인천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2022.04.14.	교사노조연맹, 스트레스 치유 집단상담 및 비대면 심리기법 교육
2022.04.28.	서울교사노조, 제4회 교권알고파 강의
2022.05.06.	교사노조연맹, 교직 만족도 및 교권 존중 설문조사 진행
2022.05.06.	인천교사노조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 답변 공유
2022.05.10.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간담회 - 도성훈 후보
2022.05.11.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간담회 - 최계운 후보
2022.05.16.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간담회 - 서정호 후보
2022.05.13.	인천교사노조 사무실 개소식
2022.05.24.	2022년 교사노조 교권 실무자팀 모임 2차
2022.06.02.	[보도자료] 인천교사노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바란다 - 교권 강화 및 수업권 보호 촉구 외
2022.07.05.	교사노조연맹, 교권침해(폭력 피해) 설문 요청
2022.07.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항보승희 의원실 면담
2022.07.14.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차(주최 : 강득구 의원실)
2022.07.26.	교사노조 교권 실무자 정기 모임 6차

날 짜	활 동 내 용
2022.08.26.	인천시교육청 주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방안 토론회
	<p>[교육활동 보호 관련 인천교사노조의 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교육청+교원단체+전문가집단) 2. 교육청 및 지원청 교권 관련 인력 확대 및 업무 재구조화 3.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방안 마련 4. (가칭)인천교육청교권보호조례 제정
2022.08.30.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 공모전
2022.09.24.	교권침해 대응방안 토론회(주최 : 민형배 의원실)
2022.09.24.	인천교사노조-경호업체 긴급출동 MOU체결식, 경호 서비스 진행
2022.10.20.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 서명 운동
2022.10.22.	알아야 지킨다, 알아야 누린다! 교권 연수 특강!(자문 변호사)
2022.11.24.	[보도자료]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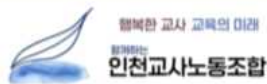
2. 인천교사노조 조합원 보호 활동

- 가. 변호사 법률 자문 및 상담
- 나. 교권보호기금 운영 및 소송비 일부 지원
- 다. 경찰서 조사 시 변호사 안심 동행
- 라. 심리 상담 실비 지원
- 마. 긴급 경호 서비스

갑질부터 교권침해까지 완벽대응!

선생님은 교육만 하세요.
나머지는 인천교사노동조합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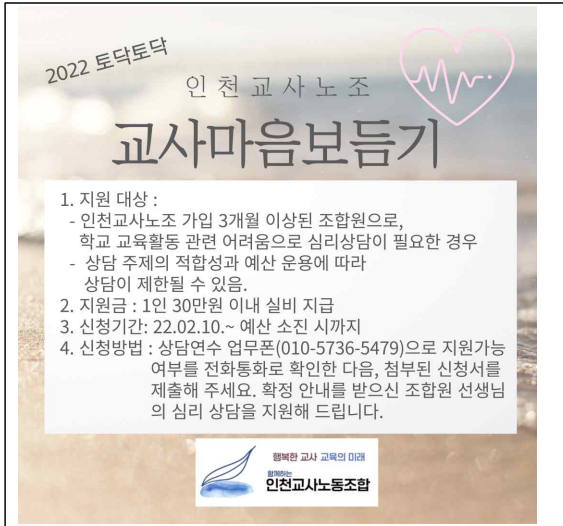
*대상: 가입 후 6개월 이상 조합원
*범위: 교권침해 및 갑질(개인사 X)



문의: 010-8108-5479
홈페이지: ictu.kftu.net



3. 심리 상담 실비 지원 후기

 <p>2022 토닥토닥 인천교사노조 교사마음보듬기</p> <p>1. 지원 대상 : - 인천교사노조 가입 3개월 이상된 조합원으로, 학교 교육활동 관련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담 주제의 적합성과 예산 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p> <p>2. 지원금 : 1인 30만원 이내 실비 지급 3. 신청기간: 22.02.10.~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상담연수 업무폰(010-5736-5479)으로 지원가능 여부를 전화통화로 확인한 다음,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확정 안내를 받으신 조합원 선생님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p> <p>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인간존엄 인천교사노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토닥토닥 교사마음보듬기 (상담비 지원 사업) □ 사업시기: 22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22년 지원 인원: 23명 <p>※ 이 사업은 인천 교사들의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인천교사노조의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p>
--	---

♡ ‘토닥토닥 교사마음보듬기(상담비 지원 사업)’ 후기

1. 상담기관을 미리 정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서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평이 좋은 곳을 잘 찾아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2. 교원공제에서 하는 서비스는 이미 내정된 기관이며 올해부터 아예 프랜차이즈 기관이 60% 정도 차지하더군요. 상담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인천교사노조 사업은 본인이 직접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몇 년 전부터 어려움을 느껴왔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할 일이 많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시해오다가 완전히 번-아웃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겠다 싶었을 때 상담 지원에 대한 문자를 받고 이거라도 잡아야지 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신과를 찾거나 상담을 받기까지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거부감도 문제가 되었고, 게다가 나와 맞는 상담센터와 선생님을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병원의 처방과 센터의 심리검사와 상담은 모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상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지자체, 교육청, 공제회 등도 알아보며 계속 도움을 받아 잘 회복하려고 합니다.
5. 교육 활동 중 심리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사노조에서 상담비용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상담 및 병원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7.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 마음을 보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9.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0.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노조 상담과 더불어 의료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어요.
12. 한참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5회기 상담을 받고 더 상담을 받고 싶던 와중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당 10만 원이라는 비싼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실 뿐만 아니라 상담기관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3. 4년 전부터 불안증이 있다고 인지하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상담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내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되진 않을까 하여 망설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조의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용기 내 신청해보았고 상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상담 이후에도 꾸준히 자비로 상담도 받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상담으로 한 발짝 용기 내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상담지원과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4. 든든하게 위로를 해주는 지원군이 생긴 기분입니다.
15.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지만 교원들의 고충에 노조가 공감하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이런 지원이 있어서 더욱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 또 기회가 있다면 신청하고 싶고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 학교에서의 일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상담을 지원해주니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상담에서 상담사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정 기관을 정해 놓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19. 너무 감사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조 지원 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안내

① 인천시교육청 교원돈움터 및 협약기관

- 인천시교육청 교원돈움터 및 협약기관을 이용한 심리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관내 교원(기간제 포함) 중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육활동 소진, 자살·자해로 인한 트라우마, 코로나19 복귀 교원, 기타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교원 등
- 협약기관 이용 시 100만 원까지 지원
- 문의 : 인천시교육청 교원돈움터 032-550-1783

②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마음쉽

- 3회 무료 신청 가능(예산 소진 전까지)
- <https://www.ktcu.or.kr/WF/WF-P260M01.do>
- 마음쉽 전용 앱 QR코드



③ 한국노총 인천지역 본부 마음사이다 상담심리

- 인천의 근로자 대상
- 4회기 대면 상담 진행(예산 소진 전까지)
- 문의: 032-822-7900, <http://www.m-saida.kr>

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참석

- 인천시교육청 주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방안 토론회(2022.08.26.)

【토론문】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원주현 (인천여자고등학교)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¹⁵⁾ 요약

□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분석

구분		주요 특징
실태조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단계에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의 꾸준한 증가 ·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심각함 ·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꾸준한 증가
	침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임 · 상해와 폭행, 성범죄 관련 유형(성적갈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성폭력 범죄)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증가 · 학교급별 침해 유형에 차이가 있음: 초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침해 유형은 상해와 폭행임; 중학교 단계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 건수가 가장 많고, 성폭력 범죄 관련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도 대부분 중학교 단계에서 발생함;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공무 및 업무 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20년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일반) 원격교육이 실시되어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원격수업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15) 최수진 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21), i-vi.

	교육활동 침해 실태	<p>행위 건수는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유형) 모욕·명예훼손 유형이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중학교 단계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유형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사 례 조 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상황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으나, 민원(반복적 민원, 악성 민원) 관련 사안이 많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화: 학생 일방 잘못(무지형, 치료요구형), 학생의 잘못과 교사의 대응 미숙이 포함된 경우로 구분됨
	기타 이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구분의 혼란: 시·도별 유형구분에 차이가 있으며, 공무 및 업무방해-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 간섭-기타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간의 혼돈이 있음 · 시·도별 학생 조치의 차이가 드러남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1. 교육활동 침해 실태에 대한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59.7%는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교원은 약 73%로 다수의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빈번한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47.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명예훼손·모욕(35.2%)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침해주체는 학부모(50.8%)가 학생(36.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도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교육활동 침해 경험과 대처 방법

-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조사에 참여

한 교원의 34.6%로 나타남

-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에서 해결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교사가 56.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가 가장 높게 나타남(54.8%)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로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교원이 89.1%로 아주 높게 나타남. ‘퇴직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했다는 교원도 47.2%로 높게 나타남. 하지만, 응답 교원의 60.2%는 아무 조치도 못 취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원의 학교와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낮게 나타남(M=1.92)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교원은 응답 교원의 약 60%대로 대체로 낮은 편임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교원은 응답 교원의 1.1%에 불과했고, 26.3%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함
-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침해자 신고 및 처분 요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M=4.08)
- 교육활동 침해 시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동료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이가장 높게 나타났고(M=4.51), 법률 자문(M=4.33), 특별휴가 등을 통한 휴가(M=4.31)도 높게 나타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중점사항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4.56), 그 외에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조성(M=4.40)도 높게 나타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구분		개선방안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우선주의 · 치유와 회복 지향 ·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예방	예방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교육의 내용 다양화: 예방교육, 교원 치유·회복, 예방 역량 함양, 풍토조성 · 학교급별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학생 간 관계 개선 ·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안내 메시지 추가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홍보 확대 및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책무성 강화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중'의 개념 명료화 · 침해 학생과 침해 가능성을 지닌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체계 확대 · 학부모 역할 재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일원화된 민원 수합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 강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직권고발과 가중처벌
대응	사안 처리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위원회 명칭 변화와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적극적인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휴가 활용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확대 · 법적 지원의 실질화 · 교사에게 즉각적인 제재조치 및 지도 권한 부여
	침해자 조치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제공 · 전학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피해 교원 회복	교원치유센터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원 복귀 후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교원치유지원센터 성과관리의 내실화
	교원치유센터 역할 보완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운영 · 교원의 정기적 상담 체계 마련

2 사례를 통해 본 교육활동보호 제도 및 대응의 문제점
 -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1. 학교 및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온 보호자에 대한 대책 미비

- 폭행 가해 보호자는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외부인을 동반하

여 학교에 사전 약속 없이 무단 방문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지 방안 미비

- 사건 이후에도 보호자는 학교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중
- 타 보호자, 학생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루머를 퍼트리고 있으나 대응 및 제지 방안 없음
- 쌍방폭행으로 주장하며 교사를 고소한 상태이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없음

2. 관리자의 소극 대응

- 사건 당시 교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교무실로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뿐

3. 교육청의 지원 미흡

- 사건 이후 피해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심리적 지원뿐
- 관련 법령¹⁶⁾에 의해 교육청에 가해자 고발을 문의하였으나 교육청은 초반에 미온적 대응
- 병원비, 변호사비 등의 경비는 모두 사비로 지출 중
- 경찰조사, 교육지원청 조사 과정에서 개인으로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

4. 사건을 공유하는 주변 학생들의 고충에 대한 지원 방안 미흡

- 보통의 경우 교권침해 사안은 특정 학생, 보호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
- 그 과정에서 사건 장면을 공유하게 되는 주변 학생들에 대한 배려, 지원책 부족
- 이는 다수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심리적 고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한계

- 유사한 사안이라도 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인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유, 초, 중, 고, 특수 등 학교급별 특징에 따라 인정 여부를 달리 보는 시선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 ④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3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문제점

1. 보복성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 활용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학생(피해, 가해)이 불리해 질 것을 예상하거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 자녀의 학교 부적응 또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의 원인을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2. 협박적 성격의 아동학대 신고 위협

- 아동학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경계가 모호함
- 아동학대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문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라 주장하여 이후 교사가 실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병가 중인 고충 상담 사례

3.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 부족

-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그 과정에서 교육청, 구청, 경찰, 검찰 등 최소 4~5 번의 조사를 받아야 함
- 평범한 개인이 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은 교직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음
- 오히려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고려하는 경우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의 전형적인 과정¹⁷⁾

- 학생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이거나 수업 방해가 심한 정서장애, 정신질환, 특수교육 대상자(진단검사 회피 또는 치료나 특수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등)인 경우, 학교의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부장교사를 우선 아동학대범죄행위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그래도 지도가 진행되면 온갖 시비를 걸며 민원, 신고, 소송을 제기함
- 신고 방법은 인터넷 검색(맘카페), 각종 변호사, 브로커 등을 통해 쉽게 파악
-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수백~수천만 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함
- 학교장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일단 교사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함
-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학대 정도에 대한 판단 없이 교사를 우선 직위해제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하고 있음
- 무고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 경찰 수사 - 검찰의 수사 종결>로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됨
 - 문제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어져 교육이 붕괴되고 모든 학생이 피해입음
 - 무혐의 통지 후에는 학부모가 다른 혐의로 교사를 또 신고하고, 반복됨
 - 검찰로부터 무고 판단까지 받기가 어려워, 허위신고자는 대부분 처벌이 없음
 - 무고죄가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도 상대 학부모가 기초수급자 등인 경우, 소송을 통해서도 위자료 등 실익을 받아내기 어려움
 - 피해 교원은 무혐의가 확정된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과 치료비를 일부 교육청이나 연금공단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신적 피해까지를 포함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
 - 학대 행위가 전혀 없던 교원도 불안함 속에 신체·정신적 치료를 받으며 휴가, 휴직, 비정기 전보로 학교를 떠남. 심한 경우 퇴직, 자살

4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해결을 위한 인천교사노조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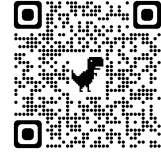
1. 정책 마련을 위한 정기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

- 관련 근거 : 인천교육청-인천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2022.4.8.) 제54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⑨ 교육청은 교원 단체와 교권관련 협의회를 연2회 이상 운영하며,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협의체 구성원에 교원단체, 교육청 업무 관련 담당자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함
- 협의체의 의제 논의 과정부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 공유할 필요

- <협의체 논의 의제 예시>
- 피해 교사를 위한 물리적,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
 - 관리자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강조 방안 마련
 - 보복성, 협박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 교원돌봄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변 학생들의 고충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

17) 왕건환, 황봄이,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대응에 대한 비판적 시각」, 교육부 토론회 발표 자료

- 현장 의견 수렴 중심의 상향식 논의 구조 마련 필요
- (서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위한 TF팀 운영 :변호사비, 방어, 고소 비용 지원, 경호 지원 확대 방안, 심리상담 연계 센터 45개, 교원안심공제서비스
 (http://ssia.or.kr/business/teacher_relief_1/teacher_relief_info/_/view.do)
-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 운영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침해 대응 부서, 업무 재구조화 및 지원 인력 확대

3. 법령 대응 방안 마련

- (가칭)인천시교육청교권보호조례 마련을 위하여 현 인천시교육청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조항의 검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① 학교구성원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

제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① 학교구성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폭력 피해 학교구성원을 발견한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구성원은 피해 및 폭력을 신고한 학교구성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관련 청원할 권리)

-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 관련 사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 관계기관 등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학교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⑥ 학생은 신체적·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약받아서 안 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사회적 불리함을 가진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상담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폭력피해, 가정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상담 등 적절한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문헌>

최수진 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1


왕건환, 황봄이,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대응에 대한 비판적 시각」, 교육부 토론회 발표 자료

Ⅲ. 인천교사노조 연수 프로그램

1. 2022 인천교사노조 연수 프로그램

가. '토닥토닥 마음 Talk' 인천 교사 힐링 연수

(1) 온라인 비대면 연수

 <p>교사 마음 힐링 프로그램 토.아.톡</p> <h1 style="color: red;">토닥토닥</h1> <h1 style="color: blue;">마음 talk</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제목: ‘토닥토닥 마음 Talk’ (교사 마음 힐링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한 모임의 어려움, 퇴근 후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한 zoom 온라인 연수 실시 ◦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7시 ~ 8시 30분까지 진행 (총 4회) 		
<p>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p> <h2 style="color: red;">토.아.톡</h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요즘 잘 지내시나요? 아이를 알고 선생님이요!</p> <p>조합원 선생님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면...</p> <p style="text-align: center;">비대면 마음치유 프로그램</p> <p style="text-align: center;">토.아.톡! 을 신청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스트레스가 고공행진 중이라 어지러운 선생님 * 심신이 지쳐 활기를 되찾고싶지만 병곡은 포기 못하는 'I' 선생님 * 심신이 지쳐 활기를 되찾고싶지만 혼자보다는 어렸이 좋은 'E' 선생 </div>	<p>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p> <h2 style="color: red;">토아톡 프로그램</h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이렇게 신청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말 공지 후 신청 - 주제별 15명(초과시 선착순) * 참가비 : 무료 * 활동 장소 및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zoom) 활동 - 매달 셋째 주 목요일 19:00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이렇게 힐링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만들기를 통한 마음 치유 * 원에 체험 활동을 통한 힐링 * MBTI, 애니어그램 등 성격 검사 * 숲속 힐링(대면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각 프로그램 주제와 일시는 매달 말 공지됩니다.</p> </td> </tr> </table>	<p>이렇게 신청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말 공지 후 신청 - 주제별 15명(초과시 선착순) * 참가비 : 무료 * 활동 장소 및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zoom) 활동 - 매달 셋째 주 목요일 19:00 	<p>이렇게 힐링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만들기를 통한 마음 치유 * 원에 체험 활동을 통한 힐링 * MBTI, 애니어그램 등 성격 검사 * 숲속 힐링(대면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각 프로그램 주제와 일시는 매달 말 공지됩니다.</p>
<p>이렇게 신청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말 공지 후 신청 - 주제별 15명(초과시 선착순) * 참가비 : 무료 * 활동 장소 및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zoom) 활동 - 매달 셋째 주 목요일 19:00 	<p>이렇게 힐링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만들기를 통한 마음 치유 * 원에 체험 활동을 통한 힐링 * MBTI, 애니어그램 등 성격 검사 * 숲속 힐링(대면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각 프로그램 주제와 일시는 매달 말 공지됩니다.</p>		

① 6월 16일(목) PM 7:00~8:30 연수

■ 주제: 향기 치유 프로그램_롤온 향수 만들기 ■ 참여 인원: 약 15명



② 7월 21일(목) PM 7:00~8:30

■ 주제: 원예 힐링 프로그램_ '나만의 캔들' 만들기 ■ 참여 인원: 약 10명



③ 8월 18일(목) PM 7:0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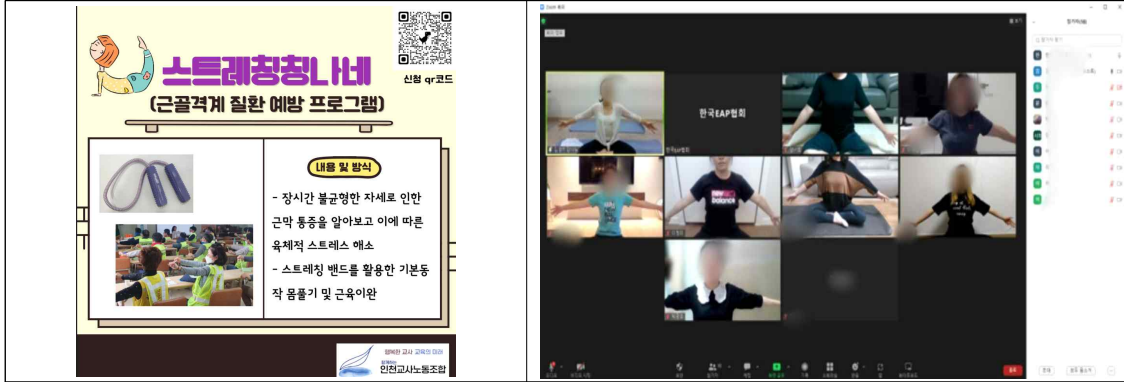
■ 주제: 원예 힐링 프로그램_ '하바리움' 만들기 ■ 참여 인원: 약 13명



④ 9월 22일(목) PM 7:00~8:30

■ 주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

■ 참여 인원: 약 10명



(2) 대면 연수(조합원과의 만남)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이 해제되면서 급별 조합원과의 만남을 위해 시행
-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연수를 통해 각급 학교의 현안에 대한 토론과 상담을 함께 진행.



① 공립유치원 교사 대면 연수(6월 22일(수) 15:00~16:30)

■ 주제: 향기 치유 프로그램 - 나만의 물은 오일 향수 만들기

■ 참여 인원: 12명 ■ 장소: 인천교사노조 사무실

■ 대상: 힐링이 필요한 공립유치원 소속 조합원 선생님
(조합원 1인이 비조합원 1명 동반 가능)

② 초등학교 교사 대면 연수(2022.7.27.(수) 11:00)

■ 주제: 향기 치유 프로그램 - 디퓨저 만들기

■ 참여 인원: 총 10명 ■ 장소: 노조 사무실

■ 대상: 힐링이 필요한 초등학교 소속 조합원 선생님

(3) 학교 방문 연수

- 학교로 직접 찾아가 연수 프로그램 진행
(2023년 학교 방문 사업 계획을 위한 시범 운영)
- 연수를 신청한 조합원 교사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 참여
(비조합원 교사 다수 포함)
- 연수 진행 시간은 주로 학생들 하교 후 1시간~1시간 30분 이내로 이루어짐

① 부평공업고등학교 대면 연수(9월 19일(수) 15:30~16:30)

- 주제: 향기 치유 프로그램 - 나만의 룰온 오일 향수 만들기
- 참여 인원: 15명 ■ 장소: 교실
- 대상: 부평공고 조합원 1인을 포함한 부평공업고 소속 신청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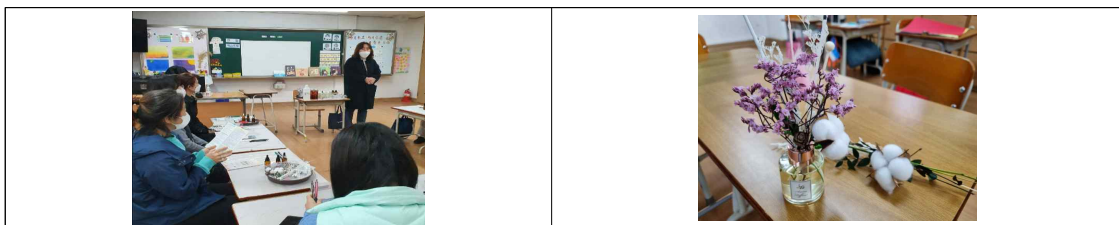
② 해든초 대면연수(11월 16일(수) 15:30~16:30)

- 주제: 원예 치유 프로그램 - 하바리움 만들기
- 참여 인원: 13명 ■ 장소: 교실
- 대상: 해든초 조합원 1인을 포함한 해든초 소속 신청 교사



③ 동수초 대면연수(11월 24일(목) 15:30~16:30)

- 주제: 향기 치유 프로그램 - 디퓨저 만들기
- 참여 인원: 10명 ■ 장소: 교실
- 대상: 동수초 조합원 1인을 포함한 동수초 소속 신청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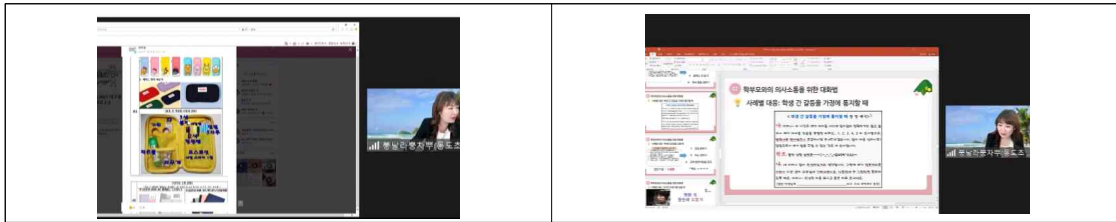


나. 인천교사노조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1) 1학기 온라인 비대면 연수

① 새학년 새마음 연수(2022.02.17.)

- 주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교사'가 행복해지는 학급 경영 비책!
- 강사: 교사 정여름 ■ 참여 인원: 55명 ■ 비대면
- 대상: 인천에 재직 중인 모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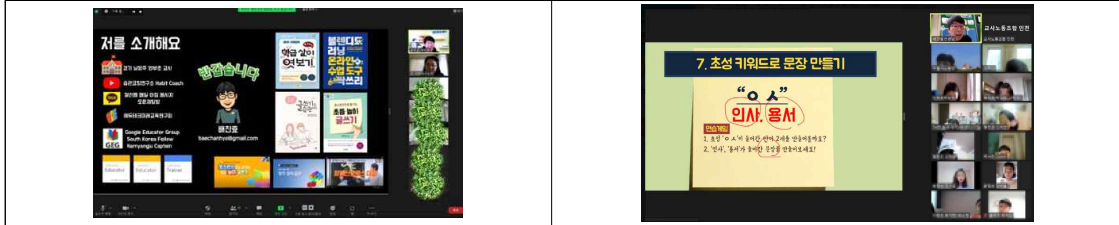


♡ 조합원 연수 후기 中

- 새학기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수를 듣는 내내 힐링하는 기분이었어요~ 부담보다는 기대로 새학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힘든 아이를 만났을 때 내 탓이 아니고 나는 의사도 경찰도 아닌 교사라는 것 잊지 않기.
- 연수받는 동안 공감이 되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선생님의 연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선생님이 제일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알차고, 학급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 감사드립니다.
-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록하고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가 느껴지는 연수였습니다. 아직도 학부모 상대가 쉽지 않은데, 학생뿐만 학부모도 상담 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 같은 학교 선배 교사에서 듣는 교사로서의 진로, 인생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로와 조언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카메라를 켜서 적극 호응을 못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듣게 되는 강의였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부터 여유를 가지고 제일 탐나는 아이템(?)부터 시작해보려고요. 강의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해 정성스럽게 답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더 해야겠습니다.
- 아이들과 만나며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완벽하게 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었는데, 대외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일관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아이가 하면 고맙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하는 조금의 융통성 있는 태도가 있어도 된다고 하셨던 게 참 힘이 되네요.
- 현장 적용 가능한 2월의 제일 적절한 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새학년 새마음 연수 2탄(2022.02.28., 03.01.)

- 주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지는 ZOOM놀이 연수
- 강사: 교사 배찬호 ■ 참여 인원: 55명 ■ 비대면
- 대상: 인천에 재직 중인 모든 교사



♡ 조합원 연수 후기 中

-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좋아요.
-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좋은 활동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용하기 쉬운 좋은 수업 도구들을 소개해주고, 자료를 공유해 주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 신학기 아이스 브레이킹에 좋은 연수 감사해요
- 포스트잇을 교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방법)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니어팟 프로그램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을 많이 배웁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포스트잇 글쓰기 아이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 일단 강사님이 주신 자료들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 중이신 유튜브도 알려주셔서 운영의 예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글쓰기 지도 관련하여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고, 유용하며 좋은 수업 자료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2) 명사 초청 특강

① 스승의 날 기념 특강(2022.05.12.)

- 주제: 교사의 소진과 회복을 말하다
- 강사: 김현수(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참여 인원: 87명 ■ 비대면
- 대상: 인천에 재직 중인 모든 교사



② 하계 특강(2022.08.19.)

- 주제: 교사를 위한 입법 활동
- 강사: 강민정(국회의원) ■ 참여 인원: 10명
- 장소: 인천교사노조 사무실 ■ 대상: 인천교사노조 조합원



(3) 2학기 조합원 연수

① 슬기로운 고교생활(2022.10.12.수.)

- 주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교사'가 행복해지는 학급 경영 비책!
- 강사: 교사 정구복 ■ 참여 인원: 28명
- 장소: 인천교사노조 사무실 ■ 대상: 인천의 교사,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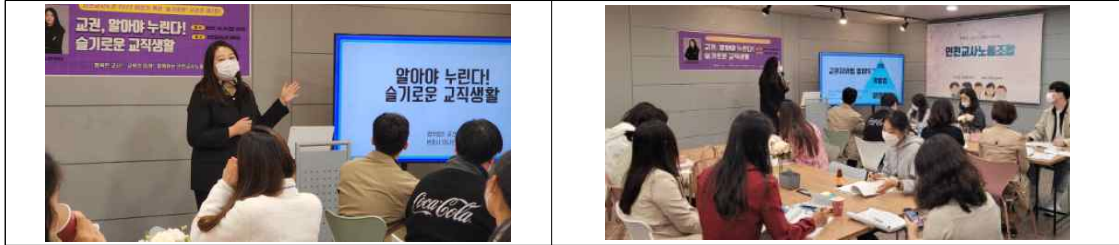


♡ 연수 후기 中

- 입시제도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강사님의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평소 고민하던 것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인천이라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그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다른 연수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연수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들어보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고입, 대입에 대한 체계가 잡히실 것 같습니다.
- 유머와 감동이 있는 연수였어요! 고입을 앞두고 불안했던 마음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이 걱정이었는데, 고민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분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소중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 대입과 아이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② 슬기로운 교직생활(2022.10.22.토.)

- 주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및 대응법, 교권 연수
- 강사: 이나연(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 ■ 참여 인원: 30명
- 장소: 인천교사노조 사무실 ■ 대상: 인천에 재직 중인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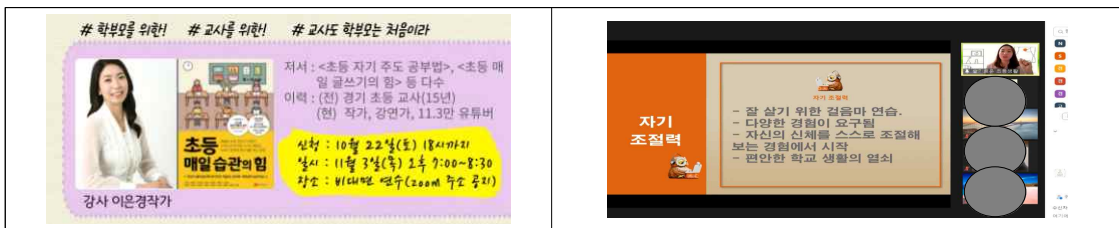


♡ 연수 후기 中

-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적절한 유머와 위트도 곁들여 주셔서 듣기도 무척 편하고 좋았습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들로 이루어진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내 삶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에 대한 연수가 좋았습니다. 수 년간 교육 현장에서 애써 오신 경험을 나눠주신 이나연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상황에 필요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③ 슬기로운 초등생활(2022.11.03.수.)

- 강사: 이은경(작가) ■ 참여 인원: 89명 ■ 비대면 온라인
- 대상: 인천의 학부모, 교사



♡ 연수 후기 中

- 너무 공감되고 도움되는 연수라 시간이 금방 갔네요. 진행해주시고 홍보해주신 인천교사노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공감’ 먼저 ‘지적’ 은 짧게! 늘 ‘100% 진심일 필요는 없다. 영혼은 조금 빼도 된다’ 가 기억에 남습니다.
- 요즘 아이들처럼 힘들었는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 지친 마음이 위로받는 거 같았어요. 강사님이 너무 유쾌하시고 긍정적이라 좋은 에너지 받았습시다.

IV. 조합원 노조 상담 후기

사건은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는 공립유치원은 소수의 긴급 돌봄 유아만 등원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교육과정 교사는 긴급 돌봄 대면 수업, 담당 학급 원격수업, 각종 행정업무를 도맡아 했지만 방과후과정 강사들은 임의로 합반 수업을 진행하여 오후에만 1일 1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저는 원내 모든 교직원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수업 시간 조정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방과후과정 강사들의 강한 반발로 수업 시간 조정 없이 끝이 났지만 이후 그들은 원내 협의회 과정에서 제가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거짓을 관리자 면담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영문도 모르고 관리자에게 처신을 잘하라는 등의 구두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내 공무원인 실무원들조차 방과후과정 강사들의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관리자 면담을 요청하였고 당시 협의회 상황에 대해 증언했지만 관리자는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과후과정 강사들은 원내 협의 사항을 제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시교육청에 전화하여 제가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하면서 업무 수행에 방해를 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관리자는 반복되는 방과후과정 강사의 문제를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면서 저에게는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저한테 신설로 전보 갈 것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방과후과정 강사의 업무 거부와 잦은 보안 점검 불이행, 무분별한 합반수업,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 관련 증거를 가지고 동료 교사와 함께 관리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방과후과정 강사와 관리자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제가 노조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방학 중 방과후과정 미운영 일수와 학기 초 적응 기간에 대해 방과후과정 강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내년도 방과후과정 미운영 일수 감축에 대한 학운위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방과후과정 강사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인근 유치원 미운영 일수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존과 동일하게 미운영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관리자한테 항의하였습니다.

저는 공문에 의거(방과후과정은 연중무휴가 원칙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강조됨)하여 미운영 일수는 원내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방과후과정 강사들이 제출한 통계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관리자는 통계 자료를 반박할 또 다른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방과후과정 강사들이 제출한 통계만을 가지고 학운위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안건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관리자 의견에 반하여 학운위에서 관련 공문과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운영 일수 안건을 원안대로 제안하였고 학부모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도 방과후 과정 강사들은 제가 독단적으로 미운영 일수를 결정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원내 모든 교직원이 참석한 유아 모집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학기 초 적응 기간도 제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했다며 관리자와 시교육청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관리자가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며 방과후과정 강사들은 저에 대한 무시와 모욕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휴일에도 연락을 취하거나 장시간의 일방적인 협의를 계속 강행하는 등의 행동도 일삼았습니다.

저는 방과후과정 강사들로 인해 관리자와 교육청에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해명해야 했고, 절차대로 진행된 업무에 대해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업무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

있고 오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자 고민 끝에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노조에 연락을 했을 때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아직 인천교사노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자 면담이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해보자고 제안해주었습니다.

제가 첫 케이스가 되는 것과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잠시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상태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였기에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심적 고통이 큰 상태였기에 노조에서는 문제 해결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돌움터의 교원 상담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센터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심리 치유를 위한 기관도 안내받았습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인 교원돌움터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을 약속해준다고 하니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분들도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후 약 두달여 동안 노조 위원들과 전화 및 ZOOM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아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제 상황을 배려하여 노조 위원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제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는 저 대신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노사협력과, 정책기획조정관 등에 노조 차원에서 질의해주고 답변을 받아서 정리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관리자가 갑작스럽게 전보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노조 위원들은 새롭게 부임한 관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조 위원들은 새로운 관리자에게 그간의 문제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함께 관리자는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원활한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의 고충이 컸음을 문

제 제기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관리자들은 앞으로 관리자 참석 하에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과후과정 강사들과 이를 방관하는 관리자로 인해 심신이 너무나 지친 상태였기에 당시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었고 더 이상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었지만 우리 노조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노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를 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겪은 일은 노조의 힘으로 인해 비롯되었고 노조로 인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노조의 힘이 막강한 방과후과정 강사보다 일개 교사인 저를 상대하는 것이 쉬웠을 터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자의 편파적인 언행에 대해 항의를 하던 당시 관리자는 그들의 노조를 신경 쓰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조를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직종은 달라도 모든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존중하며, 응원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를 등에 업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내 공무원들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며,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교사들이 또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경험자로서 혼자 힘들어하며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노조와 함께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교사노조가 지금처럼 교사들을 위한 건강한 단체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2. 11. 12.

인천교사노동조합 조합원

닫는 글

자기돌봄을 방해하는 내 안의 욕구

이지연 (인천대 상담심리 전공 주임 교수)

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 께 하 는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가르침에 지친 이 시대의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답는 글

자기돌봄을 방해하는 내 안의 욕구

이지연 (인천대 상담심리 전공 주임 교수)

계절이 변하는 세상의 풍경처럼 우리 내면의 풍경도 매번 변화를 경험한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민들, 새롭거나 해묵은 내면의 문제들을 때로는 요란스럽게 때로는 조용하게 넘어가면서 경험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같이 겪어나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실을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와도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불편한 내면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폭음, 폭식, 홈쇼핑, 넷플렉스, 인터넷 서핑 같은 기분 전환으로 감정을 마비시키지 않아도 된다. 흔히들 이런 시도들을 ‘처방전이 필요없는 가장 효과적인 단기 진통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건 사실이다. 세상은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함께 하기 힘든 사람들로 가득하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주변 지인들 속에도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마 네다섯 명은 될 거라고 장담한다. 애써 피하는 사람들, 가족만 아니라면 애써 피해 다녔을 사람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자주, 그렇게 함께 지내기 힘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도 하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감시하고, 다그치고, 불신하는 목소리로 응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일부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적이 되어 진정한 자신의 편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그리고 처음 교직을 꿈꾸었을 때, 교직 초년생이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지나 여러 생애 과업을 치르면서 살아가면서, 일에 치이고, 학부모, 학생들의 문제들에 치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이 소진되어 가고, 지치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왜 이 길을 들어섰는지,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초심의 동기와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힘듦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런 동기들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힘들게 할수 있는 측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를 지닌 사람들은 도우려는 학생, 타인의 인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지 모른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여기서 만족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생 혹은 타인 스스로 변화에 관심이 없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면, 좌절할 수도 있다. 만약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 일에 쉽게 환멸을 느끼거나 실망하게 될 것이다.

교사나 전문가로서의 일은 삶에 의미를 주는 하나의 원천이나, 그것이 만족을 느끼는 유일한 원천은 아니어야 한다. 학생이나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시간,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소진으로 이끌 수 있다.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내하며, 힘을 부여하고, 교육하고 지지하지만, 변화에 대한 힘과 결정은 학생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떡잎부터 남달랐을 수 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학교에서 상담자나 조력자 해결사 역할을 해왔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가족들 중 다른 구성원들의 문제와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는가? 동료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말 거는 걸 편하게 생각했는가?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상담자나 조력자'라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받으려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서적으로 힘든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취해 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태도가 반드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담자나 교사는 자신의 역동을 자각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삶과 상담자로서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 원가족에서 중재자였던 상담자나 교사는 갈등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화나 분노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탐색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자기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의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할 수 있다. 스스로를 위해 도움을 청할 줄 모른다면, 사적인 관계나 학교 장면에서 쉽게 소진되고 정서적으로 고갈될 수도 있다. “아니오” 혹은 “싫어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개인적인 한계와 경계들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핵심 요소이다. 타고난 조력자들은 꽤 자주, 이런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Skovholt는 개인적 자아를 유지하고 전문가적인 회복 탄력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ovholt는 상담자들에게 직업에서 일방적인 돌보기의 위험성을 자각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시달리게 된다면, 곧 타인과 치료적으로 작업할 능력이 방전되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Skovholt가 지적하듯, “다른 직업인들은 일에서 사용하는 도구-오페라 가수의 목소리, 교사의 자세, 나무꾼의 도끼, 사진작가의 눈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돌보는 학생과 사람들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업하려면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

자기 도움에 대한 욕구

학생이나 타인을 돕는 데 대한 관심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싶은 관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만약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어왔다면, 유사한 문제로 찾아온 학생이나 내담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깊이

공감하고 연민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자신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면 자신이 가진 이런 정서적 상처에 늘 민감할 것이다. 교사로서 상담자로 일하면서 여러분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갈등하는 개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학대 청소년이나 아동을 다루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기도 한다.

가끔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상담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치유하고 있지 않다면, 타인을 잘 상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싸워온 갈등들을 반영하며 불안, 우울, 비통함, 상실, 트라우마적 스트레스 등의 주제로 가득 차 있다면, 공감 피로(empathy fatigue)가 잇따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루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현상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 성찰 작업은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고 덮어둔 문제를 학생에게서 보려고 하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구에서 비껴서 있는 상담자나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이나 내담자들이 나의 도움으로 호전되고 성장했다는 말은 교사나 상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보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희망에 대한 단순한 감사 표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돌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그런 행동에 크게 만족할 수도 있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교사나 상담자가 받는 가장 큰 보상 중 하나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인정하며, 나에게 고마워하는 걸 즐긴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욕구가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내담자의 욕구는 그들에 가려질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상담자나 교사의 욕구로 인해 내담자의 건강하지 않은 의존성이 자라나기도 한다. 타인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받고 싶은 마음은 분명 당연한 것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강화하는 능력은 유능한 상담자, 교사의 자기 돌봄에 핵심적 요소이다.

정답을 주고 싶은 욕구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충고하고 '옳은 답'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들은 학생이나 내담자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확실히 충고하지 못하면 어쩐지 무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학생들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비록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대답이 그들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로서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이 자신이 취할 행동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에게 충고와 해답을 주고 싶은 욕구와 관련 있는 것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통제 욕구를 갖고 있고 때로는 남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역시 느낀다. 만약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범위의 통제를 당연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아니라면 상당한 정도로, 타인의 사고, 느낌, 행동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보인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좀더 진보적으로(혹은 좀더 보수적으로) 사고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불안해 할 때, 그렇게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기분을 바꾸려고 애쓰는가? 때때로 친한 누군가의 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는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역할이 타인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이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다시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끝으로 우리가 가진 이런 욕구들이 어떻게 나의 업무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그 욕구가 행동에 영향을 주기 전에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반응을 선택하는 우리의 힘이 담겨 있다. 우리의 반응 속에는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놓여있다.”

발행일 2023.01.30.(예정)

발행인 이주연(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청학초)

원고 주신 분 2022생활지도및상담사례공모전 참여자
및 인천교사노동조합 조합원,
김용서(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지연(인천대)
왕건환(경기기계공업고), 황봄이(용인심곡초병설유치원),
이나연(법무법인 공간), 원주현(인천여고), 황수진(이음초),
이승미(인천고잔유치원), 이지은(동수초), 이성곤(연수중),
박지영(송의초), 장수진(도림초병설유치원) 등

감 수 이나연(자문 변호사), 인천교사노조 교권팀 등

편집위원장 채송화(인천교사노조 정책실장, 부평공업고)

편집위원 2022 인천교사노조 집행부 및 왕건환(경기기계공업고),
황봄이(용인심곡초병설유치원), 황수진(이음초) 등

발행처 인천교사노동조합

주 소 인천시 예술로206. 구월중앙프라자 B동 405호

전 화 010-8108-5479(업무폰)

홈페이지 ictu.kftu.net

e-mail ictu24@naver.com

**가입링크
및 QR코드** 함께 하면 든든한 인천교사노조 가입하기↓↓

<https://bit.ly/3APJOVE>

